시 보

선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228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4년 4월 1일 월요일

규 칙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53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3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54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

훈 령

○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78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15

○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7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 ····· 25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15호선, 대1-1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3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73호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74호 매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정정) ····· 48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76호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변경) 고시 ····· 6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7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인천대입구역) ····· 6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0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청라IHP) ····· 6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1호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6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2호 공공하수도(소청) 설치인가 고시 ····· 7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3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 7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4호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2차) 고시 ····· 78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7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83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7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90

회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공보담당관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796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백운종합건설(주)] ····· 9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797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의성건설(주)] ····· 9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798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상진종합건설(주)] ····· 9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04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주)라희종합건설] ····· 9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10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디딤종합건설(주)] ····· 10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23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명가토건(주)] ····· 10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33호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10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54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10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36호 국제물류주선업 1차 위반-경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0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40호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 ····· 10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43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 11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49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인천가족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 11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52호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11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54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11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6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12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64호 2024년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121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4-33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3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4-34호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128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4-12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41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4-161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6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4-162호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9

군 · 구

○ 인천광역시미추홀구공고 제2024-603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 192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244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53호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53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보건 직렬란 다음에 시설관리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토목(토목건설, 목공), 건축(건축설비), 소방안전(소방기계, 소방전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임용 예정 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4항 관련)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토목(토목건설, 목공), 건축(건축설비), 소방안전(소방기계, 소방전기)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 직류는 별표 2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기술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가능 직렬 및 전공학과 추가(별표 9)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54호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54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을 각각 “교육공무직원을”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하여”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로, “교육감이”를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 결원”을 “교육공무직원 결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근로자를”을 “교육공무직원을”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을 “교육공무직원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각각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교육감 소속 근로자 직종”을 “교육공무직원 직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 분장사무란 제4호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행정지원과 분장사무란 제1호 중 “교육감소속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 중 “교육감소속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3.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분장사무란 제28호 중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관리총괄부서"란 근로자의 인사·노무기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사업부서의 정원을 승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1. ---------- 교육공무직원----------.
2.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의 정·현원, 배치, 업무, 임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 교육공무직원----------.

현 행	개 정 안
3. “사용기관”이란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 등을 직접 지휘·관리하는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3. ---------- 교육공무직원----------.
4.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 교육공무직원을 ----------.
5.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5. ---------- 교육공무직원을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며,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교육감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 -------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
제4조(정원관리)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표의 정원 책정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사용기관별·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관리) ① ---------- 교육공무직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채용) ① (생 략)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직종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근로자 결원 대체 근로자 4. (생 략)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미리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및 업무증가에 따른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교육공무직원 결원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교육공무직원을 ----------. ----------.
제6조(공정채용 기준) 교육감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절차에 필요한 공정채용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공정채용 기준) -------- 교육공무직원을 ----------. ----------.
제7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	제7조(채용결격사유) ---------- 교육공무직원으----------

현 행	개 정 안
다.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의 위임) ①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한다.	제9조(사무의 위임) ① ----------.
1. 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관내 전보	1. ---------- 교육공무직원----------
2. 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단체협약 이행실태 관리	2. ---------- 교육공무직원----------
② 교육감은 사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속 근로자의 휴직, 복직, 퇴직, 해고, 징계 등	2. --- 교육공무직원----------
3. 소속 근로자의 보수지급,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 등	3. --- 교육공무직원----------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4. --------- 교육공무직원----------
제10조(복무기준 등) 근로자의 복무, 보수 및 교육훈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따른다.	제10조(복무기준 등) 교육공무직원----------.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용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교육감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 (제1조 부터 제7조, 제9조 부터 제10조)

훈 령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78호

발 령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 교육훈령 제178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정원관리”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을 “교육공무직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근로자 결원”을 “교육공무직원 결원”으로 한다.

제7조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교육감”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 별표 중 노사협력과 부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위사업명 3부터 11까지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단위사업명 4의 제1호 “근로자 채용 기본계획 수립”을 “채용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근로자 시험 시행계획 수립”을 “시험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근로자 시험운용 관리”를 “시험운용 관리”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기타 근로자 채용에 관한 일반사항”을 “기타 채용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하고, 단위사업명 7의 제1호 “근로자 직무분석”을 “직무분석”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근로자 직종통합계획 수립”을 “직종통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근로자 인력풀 관리”를 “인력풀 관리”로 한다.

[별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총수

(단위: 명)

연번	직 종 명	정원 총수				
		공립학교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합 계
1	교무실무사	1,236	0	5	10	1,251
2	과학실무사					
3	전산실무사					
4	행정실무사					
5	구 육성회직원					
6	교무행정실무사(통합)					
7	공연장운영보조요원	0	0	0	3	3
8	과학관해설사	0	0	0	6	6
9	교육복지사	210	1	14	0	225
10	당직전담직원	1	0	0	0	1
11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0	1	5	0	6
12	사서·도서관실무사	162	0	0	2	164
13	영양사	171	0	0	0	171
14	유치원교육실무사	349	0	0	0	349
15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569	0	0	0	569
16	전문상담사	178	13	9	0	200
17	조리실무사	3,028	4	0	0	3,032
18	초등돌봄전담사	664	0	0	0	664
19	치료사	0	1	7	0	8
20	통학실무사	19	0	0	0	19
21	특수교육실무사	671	0	0	0	671
22	특수진로코디네이터	11	0	1	0	12
23	특수학급종일제강사	96	0	0	0	96
24	평생교육사	0	0	5	15	20
25	학부모상담사	0	0	5	0	5
26	향토사	0	0	0	1	1
합 계		7,365	20	51	37	7,473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요구서

직 종 명					
현 정 원 ①		명	요구정원 ②		명
			증원인원 (③=②-①)		명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정원증감사유					
기본사항	사 업 명				
	사업근거				
	사업기간				
	주요업무				
근로조건	임 금		근로시간		근무형태 (상시/방중비)
	유형 (1/2/기타)	단가(원)	1일 소정 근로시간	1주 소정 근로시간	
인건비 소요액	구분	1인당 소요액 (단위: 천원)	인원수	연간 소요액 (단위: 천원)	비고
	기본급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기타				
	합계				
재 원	현 황				
	확보방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정원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결과 통보서

직 종 명		
채용목적		
승인사항	요구인원	
	승인인원	
	기타사항	
불승인의 경우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정원 책정이 □승인 □불승인 되었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승인 대장

승인(변경)일자	사용기관	직 종	인원	책정 사유	비 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의 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제3조(정원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총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

현 행	개 정 안
1.·2. (생 략) 3. 근로자의 직무분석 결과 등 ② 사용기관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5조(정원관리 특례) 규칙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원으로 관리한다. 1.·2. (생 략) 3. 근로자 결원 대체 근로자 4.·5. (생 략) 제7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근로자 배치기준과 인원 조정 등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인력배치사업에 대한 소요인원, 근로조건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4.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육공무직원---------- ② ---------- 교육공무직원은 ----------. 제5조(정원관리 특례) ----------. 1.·2. (현행과 같음) 3. 교육공무직원 결원 --- 4.·5. (현행과 같음) 제7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교육공무직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 1. 교육공무직원 ---------- 2. 교육공무직원 ---------- 3.·4. (현행과 같음)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용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으로 변경

나. “교육감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제1조 부터 제5조, 제7조 부터 제8조)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79호

발 령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 교육훈령 제17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 시는 규제관련 서류와 관계 법령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제4조 관련)

<table>
<tr><th>대상 업무</th><th>세부분야</th></tr>
<tr><td>1. 주요정책·시책의 집행업무</td><td>가. 주요 시책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 사업
※ 신규 사업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사업 제외</td></tr>
<tr><td>2. 계약업무</td><td>가. 공사, 용역, 물품 제조 · 구매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공사</th><th colspan="2">용역</th><th rowspan="2">물품 제조·구매</th></tr>
<tr><th>종합</th><th>기타</th><th>설계·감리·기술</th><th>기타</th></tr>
<tr><td>추정가격</td><td>5억 원 이상</td><td>3억 원 이상</td><td>2억 원 이상</td><td>2억 원 이상</td><td>1억 원 초과</td></tr>
</table>
※ 단, 조달청에 조달요청하는 물품(관급자재 포함)·용역계약, 조달청 제3자단가 및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구매, 실험실습재료구입, 급식 식재료, 방과후학교 운영 계약, 현상공모 설계용역 제외

나. 그 밖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계약업무
1)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추정가격을 이유로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
2)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3)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합쳐진 통합사업의 경우 물품·제조 구매 추정가격이 1억 원 초과인 경우</td></tr>
<tr><td>3. 예산관리 업무</td><td>가. 예산 및 예비비
<table>
<tr><th>세부 분야</th><th>실시 대상</th><th>비고</th></tr>
<tr><td>예산의 이·전용</td><td>건당 1억 원 이상</td><td rowspan="2">인건비성 경비의 사업은 제외</td></tr>
<tr><td>예비비 신청</td><td>건당 1억 원 이상</td></tr>
</table></td></tr>
<tr><td>4. 기타</td><td>교육감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td></tr>
</table>

[별지 제5호 서식]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의뢰서(제4조의2 관련)

제목	
주요내용	
쟁점(현안)사항	
근거법령	
의뢰자 의견 등	
기타	
첨부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의견서(제4조의2 관련)

제목			
신청기관 (부서)		접수일자	
주요 내용			
감사 의견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감사 방법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
제4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일상감사에서 제외한다.	제4조(대상업무) ----------. ----------.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한 계속비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

현 행	개 정 안
	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 시는 규제관련 서류와 관계 법령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일상감사의견 통보) ① (생략)	제9조(일상감사의견 통보)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가. 2014년 제정 이후 반영하지 못한 계약업무 사업금액의 현실화를 통한 대상기관 일상감사 업무 경감 및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22.9.20.)으로 수의계약 금액 상향*

* 종합공사 2억 원→4억 원, 전문공사 1억 원→2억 원, 용역·물품 5천만 원→1억 원

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05.18.)에 따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규정을 추가

2.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대상 계약업무의 대상금액 상향 등(별표1)

나.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규정 신설(제4조의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15호선, 대1-1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15호선, 대1-1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 4.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59-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15호선, 대1-14호선)사업

○ 명칭: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당초) 면적: 2,123㎡ → (변경) 면적: 2,113㎡

○ (변경 없음) 규모: 광로3-15호선 L=260.0m, B=7.0m 확장2차로
대로1-14호선 L=150.0m, B=3.25m 확장1차로

4.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2. 8.22. ~ 2024. 6.30.

○ (변경) 2022. 8.22. ~ 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종전 토지)

○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무상귀속되는 토지

나. 관리청(인천광역시)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시설)

○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도로 확장공사” 와 관련된 일체의 도시계획도로(광3-15, 대1-14호선)

토 지 조 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용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1		장수동	산137-13	임	40	40	인천광역시	-	
2		장수동	662-15	도	194	194	인천광역시	-	
3		장수동	산135-3	임	25	25	인천광역시	-	
4		장수동	662-13	도	115	115	인천광역시	-	
5		장수동	754-2	도	29	29	국(국토교통부)	-	
6		장수동	662-11	전	76	76	인천광역시	-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		장수동	662-2	전	6	6	인천광역시	-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	
8		장수동	727-52	천	39	39	국(국토교통부)	-	
9		장수동	662-12	전	107	107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0		장수동	662-3	창	56	56	윤**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1		장수동	662-4	답	92	92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12		장수동	661	답	115	115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13		장수동	660-3	창	75	75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14		장수동	660-12	전	208	208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15		장수동	659-15	답	80	8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16		장수동	659-7	답	50	5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17	당초	장수동	688-6	도	1,171	145	인천광역시	-	
	변경	장수동	688-11	도	151	151	인천광역시	-	
18	당초	장수동	666	수	82,223	120	인천광역시	-	
	변경	장수동	666-3	수	110	110	인천광역시	-	
19	당초	장수동	695-3	도	247	123	인천광역시	-	
	변경	장수동	695-6	도	117	117	인천광역시	-	
20		장수동	727-1	천	1	1	국(국토교통부)	-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용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21	장수동	698-1	답	7	7	인천광역시	-	
22	장수동	727-51	천	40	40	국(국토교통부)	-	
23	장수동	659-3	답	30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24	장수동	660-2	전	176	176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김**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25	장수동	660-13	전	9	9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	
26	장수동	659-2	답	41	41	인천광역시	-	
27	장수동	659-16	답	124	124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73호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의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1. 관리계획명: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2. 관리지역의 명칭: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36,689.0㎡	전체 : 18동 노후·불량 : 18동(100%)	

4. 정비방향

가. 루원시티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강화 / 유입인구로 인한 편의시설 확대 및 도시 활력

나. 주변지역과 연계·소통 구축 / 기존 5개 단지 통합 계획으로 원주민 재정착 도모

다. 원적산~철마산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 / 기존 지형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단지계획

Ⅱ.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1.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지정 구분	관리지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	증) 36,689	36,689	

2.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36,689.0	100.0	
시행구역	공동주택용지		31,924	87.01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소계	4,765	12.99	
		소공원	4,200	11.45	
		도로	565	1.54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가. 도로 계획(안)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90	소로 3-1호선	가정동 산17-8번지	일반도로	신설
기정	소로	3	1	5	국지도로	23	중3-664 (가정동5-19)	소공원1 (가정동5-98)	일반도로	-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23	중3-664 (가정동5-19)	소공원1 (가정동5-98)	일반도로	폭원 확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나. 공원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소공원	가정동 5-120번지 일원	-	증) 4,200	4,200	-	-

※ A1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공동이용시설 계획(안)

구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4. 교통계획(안)

가. 기본방향

◦ 주 진입로는 중로 3-664호선, 부 진입로는 소로 2-1호선으로 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도록 하여, 지상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나. 교통처리 방안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분석대상 신호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3개소)
	A	○ 사업지 주변 교차로 기하구조 변경 < 「인천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변경신고),2021.05」 내용 반영 >
진출입 동선	B	○사업지내 주요 도로 운영계획 제시
	-	○사업지 진출입 불허구간 제시
대중교통 및 보행	-	○ 사업지 주변도로 및 진출입구 횡단보도 설치(3개소)
주차	-	○사업지 주차계획 수립 - 법정주차대수 : 1,400대 - 계획주차 : 1,847대 <법정의 131.93%>
교통안전 및 기타	-	○지하주차장 주변 반사경 설치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부 차량경고등 설치
	-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

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도면 표시번호	사업 구역	위치	사업추진현황			사업시행 방법	사업시행 (예정기간)
			면적(㎡)	시행자	추진단계		
-	-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대	36.689	조합·LH (예정)	동의서 징구 준비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결정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6.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안)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위치		ㅇ가정동 5-92대 일원
	용도	허용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ㅇ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ㅇ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ㅇ50%이하
	용적률		ㅇ300%이하
	높이		ㅇ최고높이 : 100m (최고층수 : 30층이하)
	배치		ㅇ대지 동-서축, 남-북축의 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입주민의 보행편의 증진 ㅇ천마산 등 주요경관자원으로 동서축, 남북축의 통경축을 고려한 단지 배치 ㅇ단지 중심부에 중심마당 등을 조성하여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옥외 공간 조성 ㅇ건축물 사이에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ㅇ일조수인한도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건축선		ㅇ건축한계선 : 3m 지정 (도면 참조)
	형태		ㅇ주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해소가 필요한 곳에는 필로티 구조 설치를 권장 ㅇ필로티 조성시 높이는 2개층(6m)이상으로 할 것(권장) ㅇ주거동의 형태를 다양화(탑상형, 테라스형 등)하되 탑상형은 주거의 환경을 고려하여 5호 조합 이내로 권장한다. ㅇ판상형 아파트는 지양하며, 필요시 경우 1개동의 길이는 60미터 이내, 세대수를 감안한 승강기 확보(권장) ㅇ지붕의 형태 - 지붕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의 지붕이 가능하도록 하되, 비상시 최상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옥탑은 슬라브형 지붕형태를 지양하여 아치형이나 돔형으로 건축물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창출 할 수있도록 한다. <지붕의 형태 예시> 직선형 / 곡선형 / 조합형 ㅇ건축물의 외관 등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냉난방시설 실외기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루버 등을 설치하여 차폐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ㅇ담장, 계단 등 - 공동주택에는 커뮤니티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의 높이차 등 지형상 여건 및 안전상 문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0.8미터 이하의 담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화목류의 생울타리 및 자연재료로 설치를 권장한다.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색채	ㅇ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변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ㅇ건축물 재료 및 색채,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루원시티 경관계획을 준용하여 '2040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2018'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가이드라인(2018): 신도시권역 색채기준> **적용대상지** .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특정시가지, 특정가로, 랜드마크 등을 지닌 신도시경관으로서 인천광역시의 상징적 도시경관 연출 . 대상지 : IFEZ지역, 서구, 중구, 연수구 지역, 동구계양구 일부지역 **지향 이미지 및 색채 방향** '자유롭고 활기찬, 모던한 색채' 다양성이 보여지는 공간으로 주변 공간과 연계,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 연출 **권장색 범위** ㅇ고층-중층-저층부 구분하여 입면 변화를 유도한다. ㅇ저층부는 보행환경을 고려한 저채도 색상의 자연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접근통제> ㅇ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될 수있도록 함. 다만, 지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감시를 대체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ㅇ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출입이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을 사용 ㅇ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함 <영역성 확보> ㅇ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위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함 ㅇ공간의 경계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 하는 등 공간구분을 명확하게 인지 할 수있도록 안내판, 보도, 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함 <활동의 활성화> ㅇ외부공간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있도록 각종 시설(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놀이터, 출입구)과 연계를 고려 ㅇ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시설의 종류와 배치 고려 ㅇ유해용도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계획 수립 <조경> ㅇ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 ㅇ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함 <조명> ㅇ보행자의 통행은 많은 지역의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고, 눈부심 방지 등을 설치하되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 ㅇ낮은 조도의 조명 설치로 빛공해 차단 ㅇ유입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 설치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차량 진 출입 및 주차등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설치 - 공동주택 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직접연결하는 승강기 또는 지하주차장 옥외공간이 직접 연결되는 승강기 및 경사로의 설치를 권장한다.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 도면 참조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지내 조경	○ 단지 내 조경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 단지내 녹지는 인근 공원 및 녹지를 고려하여 조경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단지내 보도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7.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 공공임대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 및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제2항을 따라,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함
- [300%(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30 = 15% 이상
- 4,811.6㎡(임대주택 연면적) ÷ 95,772㎡(최대 연면적) × 300%(용적률) = 15.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은 전체 용적률 300% 중 15% 이상이 되도록 92세대를 계획하였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10%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대비 10%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1,396세대의 10% 이상인 140세대를 계획하였음
- 따라서 총 임대주택은 232세대로 계획하였음
- 임대 주택의 인수예정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위치	전체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공동주택용지	가정동 5-92번지 일원	1,396	232	LH(한국토지주택공사)	16.62%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8.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6,689	-	36,68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6,689	감)36,68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36,689	36,689	100.0	

9.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Ⅳ. 관계도서

○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032-440-3487) 및 서구 주택과(☎ 032-560-4592)에 비치 · 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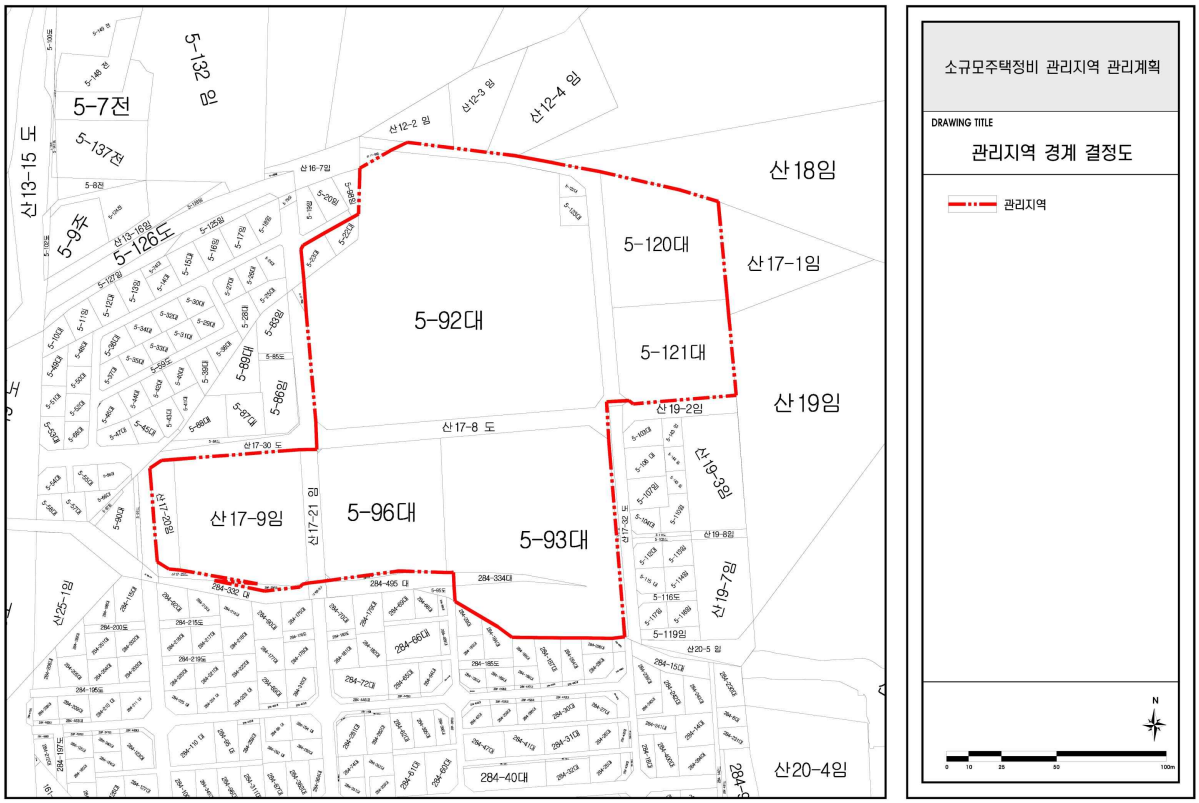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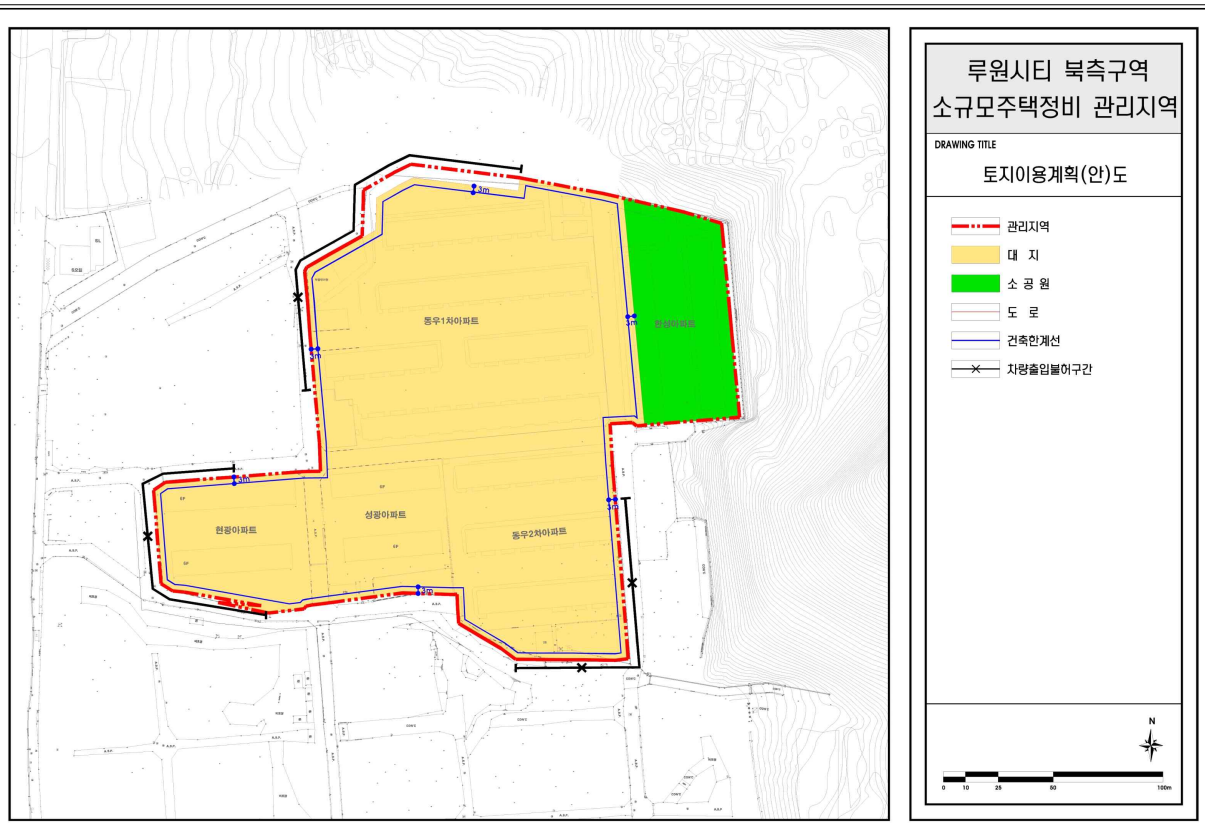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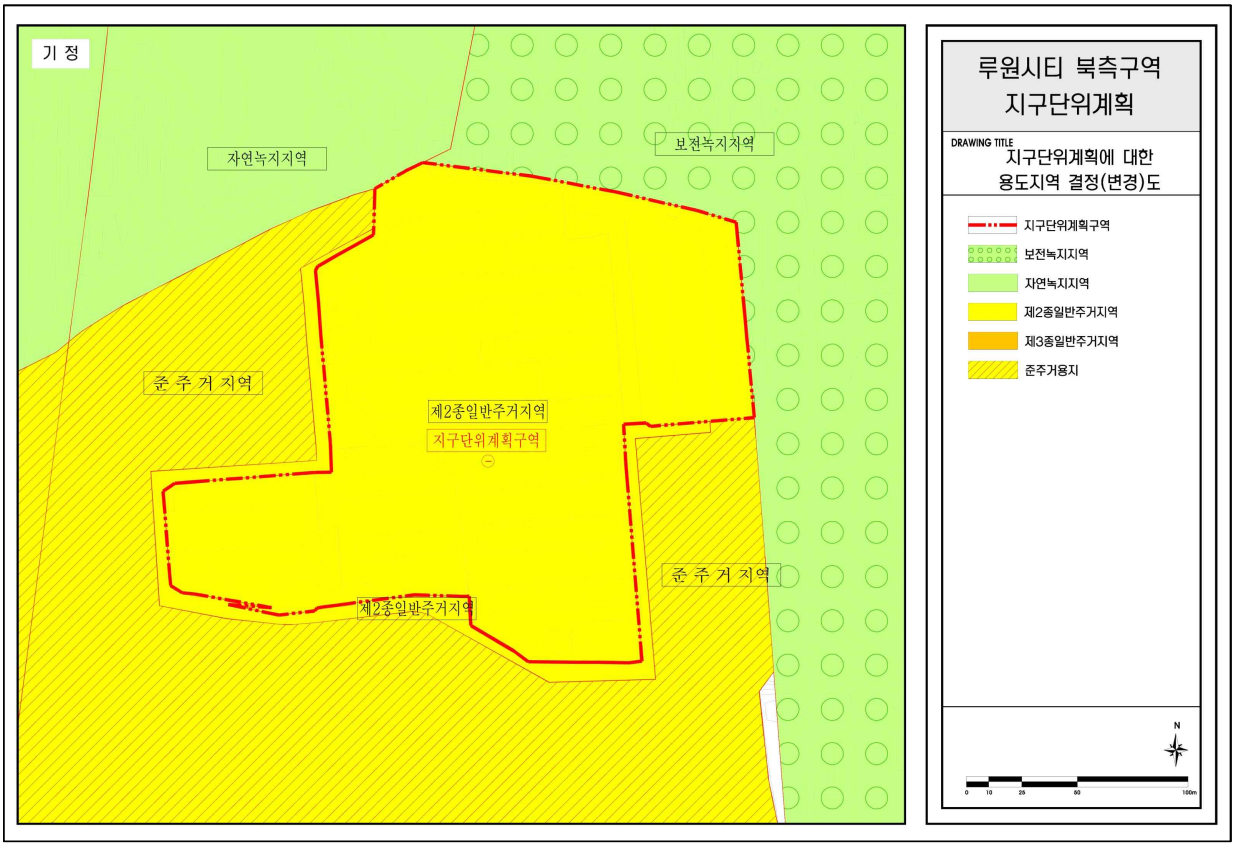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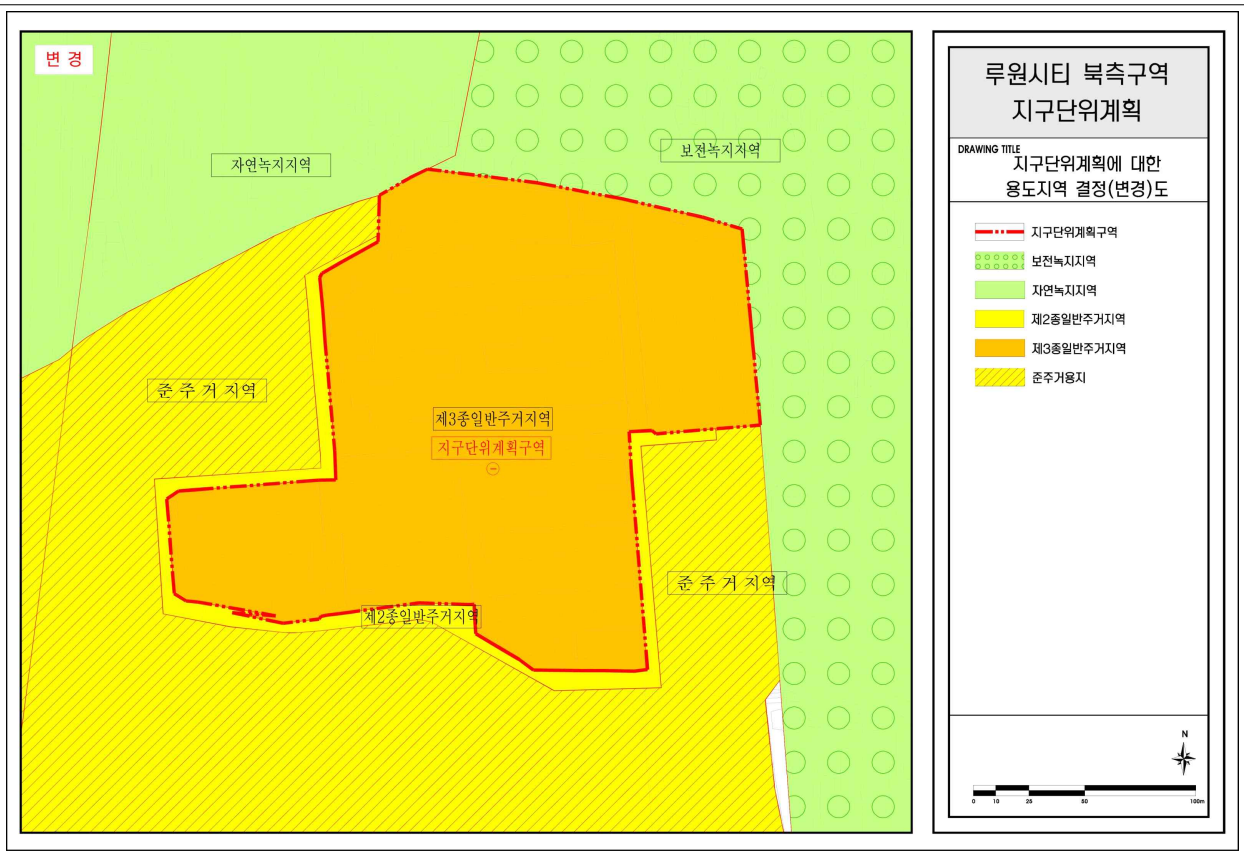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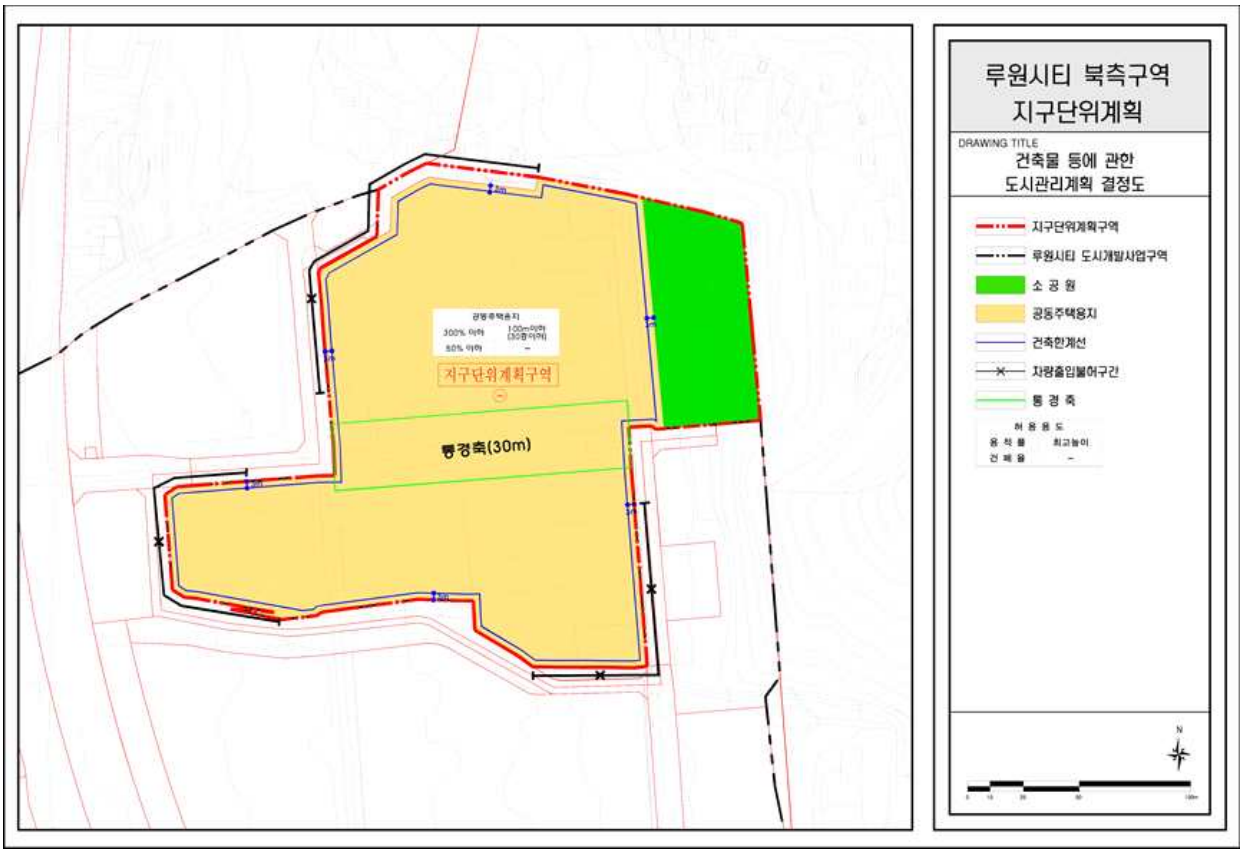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74호

매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정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이 시행하는 매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57호(2024. 3.18)호로 기 고시한 지형도면 중 국공유지 및 사유지 일부 필지 누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 04. 0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매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2. 사업목적: 상습가뭄지역 가뭄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3.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원
4. 면 적: 수혜면적 183ha(신규 171ha, 보강 205ha)
5. 주요공사
   - 수 원 공: - 저수지 2개소 준설 및 증고(매음1, 매음2)
     - 양수장 2개소 신설(매음1, 매음2)
     - 송수관로 : 3조 L=0.81km(PE관 D400～560mm)
     - 취수시설 : 사이펀 2개소 신설(매음1, 매음2)
   - 평 야 부: - 용수로 : 간선 5조 7.0km, 지선 23조 6.4km
     - 배수로 : 간선 1조 5.1km
   - 부 대 공: 가설사무소, 중기 운반, 시험비 등
6. 사 업 비: 33,656백만원
7. 사업효과
   - 농촌용수개발에따른관개개선, 수자원용수확보, 작부체계개선 및 농지이용율제고 등
8. 사업기간: 2024. 03월 ~ 2028. 12월
9.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11.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12. 기 타: 관련서류 열람(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전화 032-930-256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삼산면 매음리	1066-25	도	1,197	184	강화군					사용
2	삼산면 매음리	1066-23	답	1,848	49	최경춘	경기도 과천시 공원마을4길 4, 비1호(문원동)				수용
3	삼산면 매음리	1066-24	도	233	114	강화군					사용
4	삼산면 매음리	1066-33	답	1,653	5	송순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7-2				수용
5	삼산면 매음리	1151	구	244	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6	삼산면 매음리	1150	도	457	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7	삼산면 매음리	1066-16	답	5,920	636	고만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길48번길 53				수용
8	삼산면 매음리	1149	구	1,415	3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9	삼산면 매음리	1066-9	답	3,013	62	조연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동로 27-1	강화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근저당권	수용
10	삼산면 매음리	1066-10	답	7,623	413	송순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7-2				수용
11	삼산면 매음리	1148	구	733	1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2	삼산면 매음리	1066-28	도	155	1	강화군					사용
13	삼산면 매음리	1066-8	답	1,382	20	조혜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북로343번길 2				수용
14	삼산면 매음리	1147	구	736	194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5	삼산면 매음리	1146	도	1,436	14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6	삼산면 매음리	1066-27	도	8	8	강화군					사용
17	삼산면 매음리	1066-26	도	82	82	강화군					사용
18	삼산면 매음리	1145	구	362	15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9	삼산면 매음리	1066-1	답	8,690	130	박진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37-14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6	근저당권	수용
20	삼산면 매음리	1143	구	4,949	120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1	삼산면 매음리	1142	구	329	94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2	삼산면 매음리	1065-67	도	134	134	강화군					사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3	삼산면 매음리	1065-36	답	4,355	206	방미숙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로182번길 47				수용
24	삼산면 매음리	1141	도	2,246	3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5	삼산면 매음리	1140	구	1,070	21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6	삼산면 매음리	1065-66	도	18	18	강화군					사용
27	삼산면 매음리	1065-65	도	160	160	강화군					사용
28	삼산면 매음리	1065-25	답	7,025	121	한주식외 1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4번길 48, 12동25호 (옥련동,우성아파트)				수용
29	삼산면 매음리	1139	구	4,479	282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30	삼산면 매음리	1065-15	답	9,241	250	한선관외 1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동로 326-5				수용
31	삼산면 매음리	1065-56	전	626	165	한선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동로 326-5				수용
32	삼산면 매음리	1137	구	1,702	144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33	삼산면 매음리	1136	도	2,887	184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34	삼산면 매음리	1065-2	답	3,320	129	정달순	인천광역시 강화군 매음리 165-1				수용
35	삼산면 매음리	1065-3	답	1,503	213	전금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384-1				수용
36	삼산면 매음리	1134	구	473	61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37	삼산면 매음리	1064-11	답	2,760	206	서창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27, 11동 92호				수용
38	삼산면 매음리	1128	도	2,065	39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39	삼산면 매음리	1127	구	1,450	2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40	삼산면 매음리	1064-1	답	2,206	288	구원희외 1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3, 513동 32호(장기동, 초당마을우남퍼스트빌)				수용
41	삼산면 매음리	1126	구	6,134	172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42	삼산면 매음리	1063-18	답	7,556	278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에스랜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335-3	서강화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15	근저당권	수용
43	삼산면 매음리	1064-28	도	134	13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P&S타워)				수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4	삼산면 매음리	1063-30	도	11	2	강화군					사용
45	삼산면 매음리	1125	도	1,495	2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46	삼산면 매음리	1124	구	1,015	20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47	삼산면 매음리	1123	구	3,693	274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48	삼산면 매음리	1063-29	도	111	102	강화군					사용
49	삼산면 매음리	1063-10	답	2,707	279	조항준외 1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152번길 21-18				수용
50	삼산면 매음리	1063-1	답	3,887	608	김원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292 7동 41호(주안동 쌍용아파트)				수용
51	삼산면 매음리	1122	구	1,119	4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52	삼산면 매음리	360-10	구	55,995	18,113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53	삼산면 매음리	360-11	도	7,234	1,45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54	삼산면 매음리	264-1	답	1,848	103	이장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64번길 27-32				수용
55	삼산면 매음리	264-23	도	46	2	강화군					사용
56	삼산면 매음리	264-9	도	116	5	강화군					사용
57	삼산면 매음리	265-8	답	53	4	강화군					사용
58	삼산면 매음리	265-2	전	2,532	136	박순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828번길 5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	근저당권	수용
59	삼산면 매음리	267-8	구	390	8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60	삼산면 매음리	267-1	답	2,155	172	김용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27, 4층				수용
61	삼산면 매음리	267-2	답	750	41	고영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492-1				수용
62	삼산면 매음리	267-3	답	2,777	189	조운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284				수용
63	삼산면 매음리	267-4	답	5,345	11	조운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284				수용
64	삼산면 매음리	268-1	답	3,498	622	고원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757-1 신라아파트 나동 46호				수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5	삼산면 매음리	343-2	답	833	231	김종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8길 3, 12동 51호 (홍은동,북한산삼부르네상스)				수용
66	삼산면 매음리	345-2	답	3,980	604	고영환	인천연수구 옥련동 642-1 한국아파트 12-1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연수구 옥련동 334-1	근저당권	수용
67	삼산면 매음리	345-3	답	4,046	211	최창석	광명시 철산동 367 철산한신(아) 111-153				수용
68	삼산면 매음리	345-4	답	3,243	6	고광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16-1, 64호 (풍납동,금강캐스빌아파트)				수용
69	삼산면 매음리	360-9	도	2,364	169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70	삼산면 매음리	346-1	답	4,040	67	정은화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불은남로 597				수용
71	삼산면 매음리	359-1	답	3,755	322	고희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54번길 4 아이홈 134호				수용
72	삼산면 매음리	360-8	구	486	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73	삼산면 매음리	689-2	구	531	28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74	삼산면 매음리	370-1	답	30	10	고희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54번길 4 아이홈 134호				수용
75	삼산면 매음리	419	전	294	2	조승재	13				수용
76	삼산면 매음리	1109	구	2,479	2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77	삼산면 매음리	1108	제	2,109	10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78	삼산면 매음리	1107	구	1,051	54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79	삼산면 매음리	1062-32	답	2,615	434	고성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33, 117동 222호 (용현동,인천 SK Sky VIEW)				수용
80	삼산면 매음리	1062-40	답	179	80	강화군					사용
81	삼산면 매음리	1105-1	구	12	51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82	삼산면 매음리	1105	구	2,367	5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83	삼산면 매음리	1062-18	답	2,089	318	고성은	경기 부천시 중동로28번길27 616동 41호				수용
84	삼산면 매음리	1106	구	104	71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85	삼산면 매음리	1104	도	1,622	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6	삼산면 매음리	1103	구	951	4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87	삼산면 매음리	1062-8	답	6,453	414	김봉배외 1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4, 2동95호(동춘동,무지개마을아파트)				수용
88	삼산면 매음리	1102	구	512	263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89	삼산면 매음리	1101	구	2,044	2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90	삼산면 매음리	1062-1	답	7,938	396	김영민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544-3	삼도농업협동조합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868-1		수용
91	삼산면 매음리	1102-1	구	788	41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92	삼산면 매음리	1100	도	1,801	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93	삼산면 매음리	1099	구	1,125	3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94	삼산면 매음리	1061-23	답	9,800	1,009	고영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58				수용
95	삼산면 매음리	1098	구	3,807	101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96	삼산면 매음리	1061-32	도	66	3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97	삼산면 매음리	1061-13	답	1,921	77	박윤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6-9, 2동 22호 (부암동,유원빌라)				수용
98	삼산면 매음리	1061-14	답	8,018	491	고정식외 1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7 마길 71(내발산동 청솔수아파트 71호				수용
99	삼산면 매음리	1096	도	2,092	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00	삼산면 매음리	1095	구	1,103	2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01	삼산면 매음리	1061-3	답	4,260	222	김영천	경기도 군포시 대야2로143번길 1, 가동 22호 (대야미동,백상빌라)				수용
102	삼산면 매음리	1061-2	답	1,762	176	이수덕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64번길 6-41				수용
103	삼산면 매음리	1061-4	답	2,633	126	조미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91-14, 12동 17호 (현대아파트)				수용
104	삼산면 매음리	1061-5	답	1,249	42	고민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454				수용
105	삼산면 매음리	1061-31	도	800	10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06	삼산면 매음리	1061-1	답	2,049	596	김인숙외 2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형제봉길 1, 11동 152호(귤현동, 계양센트레빌1단지)	부평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97	근저당권	수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7	삼산면 매음리	1094	구	6,570	11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08	삼산면 매음리	1093	구	493	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09	삼산면 매음리	1060-16	답	3,779	234	박관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65	서강화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15	근저당권	수용
110	삼산면 매음리	1060-17	답	9,813	394	박은숙외 2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51번길 26,3동 24호(계산동,서해그린아파트)				수용
111	삼산면 매음리	1092	도	1,551	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12	삼산면 매음리	1091	구	838	4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13	삼산면 매음리	1060-8	답	5,329	555	이숙자외 3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64번길 26-11				수용
114	삼산면 매음리	1090	구	2,460	42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15	삼산면 매음리	1060-24	답	661	27	박현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299번길 17, 1동 115호 (작전동,미도아파트)	서강화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15	근저당권	수용
116	삼산면 매음리	1060-1	답	2,594	618	김옥희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495				수용
117	삼산면 매음리	1060-2	답	4,922	15	홍연식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535				수용
118	삼산면 매음리	1089	구	487	4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19	삼산면 매음리	1088	도	1,121	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20	삼산면 매음리	1059-13	답	3,838	460	박상담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534				수용
121	삼산면 매음리	1087	구	1,624	113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22	삼산면 매음리	1059-8	답	4,194	1,134	안경자	인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496-1	강화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근저당권	수용
123	삼산면 매음리	1086	도	1,175	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24	삼산면 매음리	1085	구	632	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25	삼산면 매음리	1059-4	답	3,361	659	안택진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1, 21동72호 (걸포동,오스타파라곤)	인천축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99	근저당권	수용
126	삼산면 매음리	1059-5	답	3,239	270	박상곤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39				수용
127	삼산면 매음리	1084	구	1,005	30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8	삼산면 매음리	1059-1	답	2,366	1,117	고재언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565				수용
129	삼산면 매음리	1058-16	답	1,740	835	윤명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52번길 6, 33동 14호				수용
130	삼산면 매음리	1081	구	1,671	33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31	삼산면 매음리	1058-10	답	3,052	464	김창례외 4명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34, 116동 92호 (중동,보람마을)				수용
132	삼산면 매음리	1081	구	1,671	8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33	삼산면 매음리	261-3	임	608	5	강화군					사용
134	삼산면 매음리	1080	구	473	11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35	삼산면 매음리	1079	도	1,000	23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36	삼산면 매음리	1058-4	답	3,700	624	최명균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591	강화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근저당권	수용
137	삼산면 매음리	1078	구	1,452	113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38	삼산면 매음리	1058-1	전	849	9	이용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82번길 6, 42동 11호 (송도동, 송도풍림아이원4단지아파트)				수용
139	삼산면 매음리	1058-2	답	4,978	255	남궁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시리미로313번길 4				수용
140	삼산면 매음리	1077	도	1,054	2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41	삼산면 매음리	1076	구	1,992	51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42	삼산면 매음리	1057-9	답	5,448	359	고갑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7-13				수용
143	삼산면 매음리	1075	구	287	5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44	삼산면 매음리	1074	도	718	23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45	삼산면 매음리	1073	구	321	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46	삼산면 매음리	1057-6	답	3,112	572	서인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1길 7, 32호 (공항동)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7길 55, 32동 77호	근저당권	수용
147	삼산면 매음리	1071	구	1,006	30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48	삼산면 매음리	1057-14	답	1,942	281	최광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88, 711동 152호 (논현동,새터마을신일해피트리)				수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9	삼산면 매음리	1057-3	답	2,314	430	최민영외 1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167번길 2				수용
150	삼산면 매음리	1057-4	답	3,072	57	최광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33, 14동 42호 (용현동,인천 SK Sky VIEW)	남인천농협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88	근저당권	수용
151	삼산면 매음리	1070	구	763	20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52	삼산면 매음리	1057-5	답	5,760	61	김영전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36				수용
153	삼산면 매음리	1069	도	671	21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54	삼산면 매음리	428-14	구	5,736	1,380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55	삼산면 매음리	692-2	제	932	73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56	삼산면 매음리	1116	제	308	13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57	삼산면 매음리	428-2	도	843	20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58	삼산면 매음리	428-6	도	294	22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59	삼산면 매음리	692-4	제	436	2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60	삼산면 매음리	1117	제	801	11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61	삼산면 매음리	692-6	제	875	8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62	삼산면 매음리	428-21	구	1,008	744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63	삼산면 매음리	1118	제	4,223	1,21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64	삼산면 매음리	428-25	도	1,375	41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65	삼산면 매음리	803	구	20,429	350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66	삼산면 매음리	359-10	답	2,268	57	김낙원외3명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74번길 3-3				수용
167	삼산면 매음리	346-8	답	7,220	1,214	고재유외 1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 212동21호 (마두동,백마마을)				수용
168	삼산면 매음리	345-10	답	3,613	947	이수덕외 1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64번길6-41				수용
169	삼산면 매음리	343-10	답	3,438	1,194	고재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464-9				수용
170	삼산면 매음리	343-9	답	3,250	424	고영백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378				수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1	삼산면 매음리	343-8	답	7,107	104	박현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3-35				수용
172	삼산면 매음리	268-7	답	1,534	761	매음농산영농조합법인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378 (매음리 341 : 고명선)				수용
173	삼산면 매음리	268-6	답	2,542	529	김인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1, 12동 83호 (동천동,행림마을진로아파트)				수용
174	삼산면 매음리	264-7	답	2,451	823	고재광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37				수용
175	삼산면 매음리	263-7	도	797	4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76	삼산면 매음리	263-6	답	3,369	1,748	김경엽외 1명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51-3 효성아파트 13-72				수용
177	삼산면 매음리	1119	제	2,674	169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78	삼산면 매음리	1120	구	5,047	299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79	삼산면 매음리	1121	제	2,551	3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80	삼산면 매음리	1063-28	답	3,022	778	김경복	318				수용
181	삼산면 매음리	1063-9	답	3,306	33	노순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154번길 3	강화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근저당권	수용
182	삼산면 매음리	1063-17	답	2,334	118	박온순외 1명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8번길 27, 619동 115호(중동,중흥마을)				수용
183	삼산면 매음리	1063-31	답	2,334	128	황긍엽외1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서검길153번길 8				수용
184	삼산면 매음리	1063-32	답	3,003	193	이효정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75, 39동 62호(운양동,풍경마을한강신도시롯데캐슬)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83	근저당권	수용
185	삼산면 매음리	1063-26	답	3,254	535	전금연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63, 129동 34호 (철산동,주공아파트)				수용
186	삼산면 매음리	1131	제	4,344	4,214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87	삼산면 매음리	1132	유	11,349	10,74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88	삼산면 매음리	1064-10	답	6,520	662	송용재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556				수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9	삼산면 매음리	1064-24	답	3,785	148	윤희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비고개로 591	삼도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225번길 4	근저당권	수용
								서강화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하점면강화대로1215	근저당권	
190	삼산면 매음리	1064-25	답	3,567	1,121	윤희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비고개로 591	삼도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225번길 4	근저당권	수용
								서강화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하점면강화대로1215	근저당권	
191	삼산면 매음리	1129	구	6,943	74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92	삼산면 매음리	1130	도	5,842	1,069	강화군					사용
193	삼산면 매음리	1065-47	유	85	60	강화군					사용
194	삼산면 매음리	1065-13	답	2,971	991	김숙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44, 115동 14호 (돈암동,브라운스톤돈암아파트)				수용
195	삼산면 매음리	1065-46	답	2,496	1,755	김동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48동 131호(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수용
196	삼산면 매음리	1065-50	유	560	389	강화군					사용
197	삼산면 매음리	1065-49	유	12	11	강화군					사용
198	삼산면 매음리	1065-48	유	422	382	강화군					사용
199	삼산면 매음리	1065-24	답	6,305	2,369	최경락	경기도 과천시 공원마을4길 4 (문원동)				수용
200	삼산면 매음리	1065-52	답	3,244	650	박경희외 1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어류정길177번길 76-162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83	근저당권	수용
201	삼산면 매음리	1065-44	답	3,512	652	박재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464, 1동 1211호(문래동3가, 국화아파트)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	근저당권	수용
202	삼산면 매음리	1065-43	답	1,473	26	이규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7-23				수용
203	삼산면 매음리	1066-7	답	8,139	438	황보연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56-1				수용
204	삼산면 매음리	1153	제	5,400	5,144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5	삼산면 매음리	1154	유	13,386	12,890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06	삼산면 매음리	1155	제	5,010	528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07	삼산면 매음리	1065-12	답	8,889	33	박규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5길 32, 12동 22호 (방화동,방화동동부센트레빌)				수용
208	삼산면 매음리	1065-23	답	3,284	100	신성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912번길 87-31	서강화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15	근저당권	수용
209	삼산면 매음리	1138	도	2,182	3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10	삼산면 매음리	1065-60	답	3,306	84	남병우외 1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578	경인북부수산업 협동조합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7-1	근저당권	수용
211	삼산면 매음리	1152-10	도	1,624	43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12	삼산면 매음리	43-7	답	377	13	최종수	석포리 256				수용
213	삼산면 매음리	1081-1	구	490	112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14	삼산면 매음리	1082	도	1,292	273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15	삼산면 매음리	1058-19	답	7,673	731	황영창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7-13				수용
216	삼산면 매음리	1111	제	12,951	28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17	삼산면 매음리	1113	제	1,318	3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18	삼산면 매음리	760-1	제	11,137	1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97㎜×210㎜[백상지 80g/㎡]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 - 76호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변경)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방류 수질기준 초과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질환경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확보로 지역개발 활성화 도모

○ 상부 공원화 등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

2. 공사개요

○ 위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47번지

○ 공사기간: 2023년 ~ 2031년(예정)

○ 총사업비(변경)

- 당초: 3,884억 원(추정)
- 변경: 4,265억 원(추정)

○ 공사내용: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27만㎥/일

3. 시행자: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4. 공사수행계획

○ 입찰방법: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

○ 낙찰자결정방법: 가중치기준방식

5. 연차별 재원조달 및 시행계획

○ 재원조달(변경)

- 당초: 3,884억원(국비456 시비2,950 원인자478)
- 변경: 4,265억원(국비233 시비3,507 원인자525)

○ 연차별 투자 및 시행계획

- 사업 시행 기간의 예산 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6.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인천환경공단에서 전담조직을 활용한 유지관리

7. 환경보전계획

○ 설계 시 별도 수립할 계획

8. 기대효과

○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로 연안수질 오염예방과 개선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9. 문의처

○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수과(032-440-370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77호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대입구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신규 출입구(5번)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 4. 1.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사항

1. 결정(경미한 변경)취지

○ 인천대입구(인천도시철도 1호선) 5번 출입구 설치를 통해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시공 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포함)

○ 실시계획이 인가된 때에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8번지 일원 (인천대입구역)

3.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총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최근결정)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도시철도	계양구 다남동	연수구 송도동	국제업무지구, 원인재, 인천시청, 부평, 부평구청	31,978	852,390	1993.6.24.	
변경	-	철도	도시철도	계양구 다남동	연수구 송도동	국제업무지구, 원인재, 인천시청, 부평, 부평구청	31,978	852,325	1993.6.24. (2023.5.30.)	감)65㎡

주) 총괄(연장, 면적) 산출은 본선 및 정거장과 차량기지를 더한 부분임

○ 본선 및 정거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최근결정)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도시철도	계양구 다남동	연수구 송도동 (송도랜드마트시티)	국제업무지구, 원인재, 인천시청, 부평, 부평구청	31,978	564,117	1993.6.24.	
변경	-	철도	도시철도	계양구 다남동	연수구 송도동 (송도랜드마트시티)	국제업무지구, 원인재, 인천시청, 부평, 부평구청	31,978	564,052	1993.6.24. (2023.5.30.)	감)65㎡

○ 정거장 세부내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비고
기정	-	철도	인천대입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8번지 일원		11,560	
변경	-	철도	인천대입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8번지 일원		11,495	감)65㎡

○ 차량기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최근결정)	비고
-	-	철도	도시철도	계양구 귤현동	288,273	1993.6.24. (2023.5.30.)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철도	· 변경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경계 및 면적 변경 총괄: 852,390㎡ →852,325㎡ 감)65㎡ 본선 및 정거장: 564,117㎡ →564,052㎡ 감)65㎡ 정거장: 11,560㎡ →11,495㎡ 감)65㎡	· 인천대입구역 출입구(5번) 시공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도로 점용범위 축소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 굴착범위 최소화를 통한 시민 안전확보와 이용객 이동편의성 강화)을 위해 출입구 직선화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5. 관련 도서의 열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철도과(☎440-3837),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453-78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철도)

○ 명 칭 :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신규 출입구(5번) 조성사업

3. 사업시행 규모

○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신규 출입구(5번) 설치 1식

구 분	구 분	위 치	규모(폭×연장×높이)
기정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폭 4.3m, 연장 50.1m, 높이 16.8m (E/S 상 · 하행 각1대 포함)
변경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폭 4.3m, 연장 46.4m, 높이 16.8m (E/S 상 · 하행 각1대 포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정준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소공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기간: 2022. 12. 12.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기정	1	송도동	48	도	92,328.1	349.0	인천광역시	
변경	1	송도동	48	도	92,328.1	312.0	인천광역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 기정: 폭4.3m, 연장50.1m, 높이16.8m (E/S 상 · 하행 각1대 포함)
- 변경: 폭4.3m, 연장46.4m, 높이16.8m (E/S 상 · 하행 각1대 포함)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0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운행허용 산업단지

ㅇ IHP 도시첨단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1호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24. 4. 1.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귤현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 면적: 182,176.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상시가화예정용지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

○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성명: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4동 1062번지 하이베라스 D동 602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8.11.24. ~ 2024. 3.31.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예정일)
- 변경: 2008.11.24. ~ 2024. 4.30.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예정일)

○ 시행방법 : 환지방식(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182,176.3	100.0	
주 거 용 지	102,409.9	56.2	
공 동 주 택	98,418.4	54.0	
1 B L	45,815.3	25.2	
2 B L	18,848.6	10.3	
3 B L	33,754.5	18.5	
단 독 주 택	3,991.5	2.2	
도시기반시설용지	79,766.4	43.8	
근 린 공 원	33,001.1	18.1	
어 린 이 공 원	4,521.1	2.5	
완 충 녹 지	6,033.3	3.3	
경 관 녹 지	9,595.5	5.3	
도 로	25,063.0	13.8	
주 차 장	1,137.7	0.6	
저 류 시 설	414.7	0.2	지하저류조 1개소
	(666.9)	(0.4)	지하저류조 2개소 (완충녹지 지하부 중복 결정)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655)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스마트도시재생과, ☎ 032-450-8363)

○ 열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Ⅱ.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

○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 면적: 182,176.3㎡

4. 시행자(변경 없음)

○ 성명: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4동 1062번지 하이베라스 D동 602호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8.11.24. ~ 2024. 3.31.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예정일)
- 변경: 2008.11.24. ~ 2024. 4.30.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예정일)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한다)의 결정내용(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655)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스마트도시재생과, ☎ 032-450-8363)

○ 열람내용: 실시계획(변경) 인가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2호

공공하수도(소청) 설치인가 고시

- 소청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

옹진군수가 시행하는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일원 상의 『소청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하수과 ☏032-440-3703) 및 옹진군청(환경녹지과 ☏032-899-24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4.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 성 명: 옹진군수
   -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용현동, 옹진군청)

2. 사업목적
   - ❍ 환경오염방지 및 인근 해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기반시설인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3.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소청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 ❍ 위 치: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77번지 일원
- ❍ 면 적: 하수처리시설 1,306㎡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종 류: 하수도

○ 명칭 및 용량

- 명칭: 소청 공공하수도
- 용량(규모)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처리용량	40㎥/일 증설 [기존 80㎥/일→ 변경 120㎥/일]	
하수관로	D80~200㎜, L=2,270m	
기 타	오수맨홀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정비 32가구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예정 배수구역: 0.108㎢

○ 예정 하수처리구역: 0.108㎢

6. 사업시행기간: 2024. 9. ~ 2026. 4. (20개월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토지조서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면 적 (㎡)	편입면적 (㎡) (영구점용)	소유자	비 고
	읍, 면, 동			지 번					
1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77	전	1,306	1,306	김○○	
합 계						1,306	1,306		

○ 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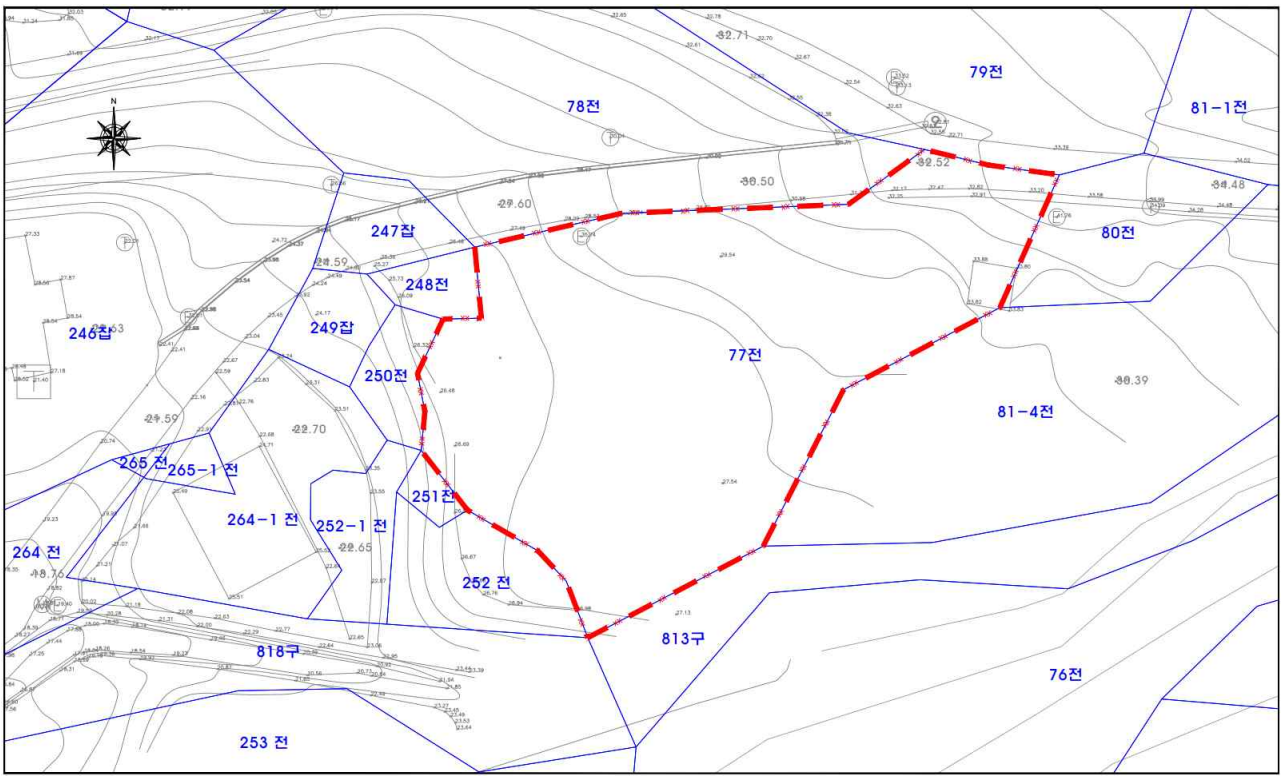
78전
79전
81-1전
80전
247잡
248전
249잡
246잡
250전
77전
81-4전
265 전
265-1 전
251전
264-1 전
252-1 전
264 전
252 전
818구
813구
76전
253 전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3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207번지 인천국제벨로드롬(계양경기장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종합운동장)

○ 명 칭 : 계양경기장(인천국제벨로드롬) 내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일부 용도변경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계양경기장(인천국제벨로드롬) 연면적)3,725.49㎡ 중 245.30㎡

○ 규 모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일부(245.30㎡) 용도변경

위 치		기 정		변 경	
		용 도	연면적(㎡)	용 도	연면적(㎡)
주1	1층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1,833.73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1,588.43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22.36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22.94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체육진흥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구분	
1	계양구 서운동	207	체	234,884.2	234,884.2	인천광역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4호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2차)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50호(2023. 10. 10.)로 고시된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변경)

<table>
<tr><td rowspan="3">개요 및 범위</td><td colspan="2">사업명</td><td>사업유형</td><td>총사업비(억원)</td><td>사업기간</td></tr>
<tr><td colspan="2">제물포 Station-J</td><td>중심시가지</td><td>704.14</td><td>2022~2026</td></tr>
<tr><td>사업위치</td><td colspan="2">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물포역 일원(도화동, 숭의동 일부)</td><td>사업면적</td><td>147,700㎡</td></tr>
<tr><td>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td><td colspan="5">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td></tr>
<tr><td>사업 필요성</td><td colspan="5">인천대 이전, 인근 재개발로 인한 신규·대형상권 등장 등 원도심 쇠퇴 심화로 인한 도시재생사업 필요성 대두</td></tr>
<tr><td>사업내용 및 효과</td><td colspan="4">거점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경관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제물포역 일원의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활성화 도모</td><td>상세 3 참조</td></tr>
<tr><td>재원조달방안</td><td colspan="4">마중물 360.00억, 자체지방비 133.29억, 지자체 95.36억원, 공기업 등 115.50억</td><td>상세 5 참조</td></tr>
<tr><td>국가지원항목 및 필요성</td><td colspan="4">4개 재생사업 부문, 10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td><td>상세 5 참조</td></tr>
</table>

활성화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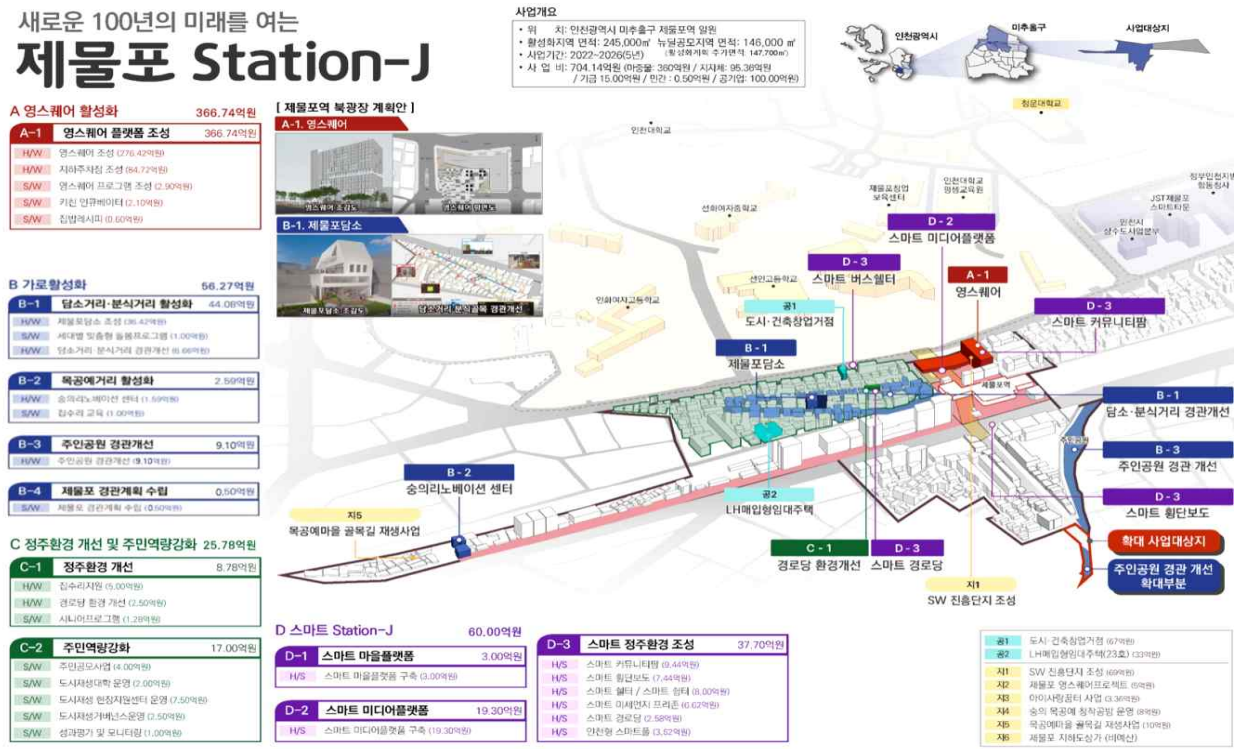

※ 위 활성화계획도는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계획의 목표(변경없음)

비전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여는 **"제물포 Station-J"**
목표	1.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주민 삶의 질 증진 및 유동인구 유입 3. 주민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4. 지역을 새롭게하는 스마트 제물포

3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합계		704.14	
마중물 사업	소계	508.79	
	영스퀘어 플랫폼 조성	366.74	SW진흥단지, 청년창업지원 등 핵심 앵커시설과 주차장을 공급하는 광장 플랫폼 조성
	담소거리 · 분식거리 활성화	44.08	어울림센터, 현장지원센터 등 주민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및 담소거리 · 분식거리 경관 개선
	목공예거리 활성화	2.59	숭의 리노베이션센터 리모델링 및 집수리 교육 지원
	주인공원 경관개선	**9.10**	**주인공원 노후 시설 정비 및 경관 개선 (사업면적 확대, 사업비 증액, 사업기간 연장)**
	제물포 경관계획 수립	**0.50**	**제물포역 경관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경관계획 수립내용 일부 축소)**
	정주환경 개선	8.78	집수리지원, 경로당 환경개선 및 시니어 프로그램 운영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주민역량강화	17.00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추진,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스마트 마을플랫폼	3.00	디지털 마을플랫폼 구축하여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스마트 미디어플랫폼	19.30	지역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미디어플랫폼 지원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	37.70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설치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지자체 사업	소계	95.36	
	SW 진흥단지 조성	69.00	미래 첨단사업을 원도심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SW산업 핵심 성장 거점 조성
	제물포 영스퀘어프로젝트	5.00	제물포역 일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아이사랑꿈터 사업	3.36	지역 내 영유아들을 위한 실내 놀이 활동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숭의 목공예 창작공방 운영	8.00	목공예공방거리 내 숭의목공예센터와 창작공방을 활용한 목공예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골목길 재생사업	10.00	골목길 경관 개선, 기반시설 및 위험시설 정비, 주민이용공간 조성
	제물포지하도상가	비예산	제물포역 지하 상가 리모델링 및 활성화 사업 추진
공기업 투자사업	소계	100.00	
	도시 · 건축스튜디오	67.00	도시건축 분야 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 유도
	LH매입형임대주택(23호)	33.00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공급

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거점공간 조성, 주민역량 강화,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직·간접 고용 창출
거점공간 조성	주차장 및 단순 이동공간으로 이용되는 제물포역 북광장 부지에 광장기능을 복원하고, SW진흥 앵커시설 · 지하주차장 등 조성
노후주택 정비	외부경관 개선, 외벽 보수, 창호 교체, 지붕 보수 등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
생활기반시설 개선	담소거리 · 분식거리 · 주인공원 경관개선 및 스마트 기반시설 조성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단위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공동 이용시설	영스퀘어 조성	미추홀구 도화동 81-3 일원	광장 복원, SW진흥 앵커시설, 스타트업 지원시설 조성
	제물포담소 조성	미추홀구 도화동 80-94, 128	어울림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조성
	숭의리노베이션 센터	미추홀구 숭의동 124-11	리모델링을 통한 숭의목공예센터 환경 개선 및 루프탑 커뮤니티 공간 조성
	경로당 환경 개선	미추홀구 도화동 80-79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주차장 설치	지하주차장 조성	미추홀구 도화동 81-3 일원	영스퀘어 내 공영주차장 조성

구분	단위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시설 및 도로 정비	담소거리·분식거리 경관개선	미추홀구 석정로162번길, 150번길, 92번길 일원	골목환경 개선 및 휴게거점 조성
	주인공원 경관개선	**미추홀구 숭의동 50-2 일원**	**주인공원 노후시설 및 경관 개선**
	스마트 횡단보도	대상지 일원	주요 이동로 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스마트 쉘터/스마트쉼터	대상지 일원	IoT컨트롤러를 활용한 버스쉘터 및 쉼터 공급
	스마트 미세먼지 프리존	미추홀구 도화동 81-3 일원	영스퀘어 광장 내 미세먼지 프리존 설치
	인천형 스마트폴	대상지 일원	방범·주차CCTV, 가로등, 비상벨 등을 복합형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 추진

5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합계	마중물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합계		704.14	180.00	180.00	228.65	100.00	15.00	0.50
마중물 사업	**소계**	**508.79**	**180.00**	**180.00**	**133.29**	**-**	**15.00**	**0.50**
	영스퀘어 플랫폼 조성	366.74	110.04	109.46	132.24	-	15.00	-
	담소거리 · 분식거리 활성화	44.08	21.43	21.60	1.05	-	-	-
	목공예거리 활성화	2.59	2.59	-	-	-	-	-
	주인공원 경관개선	9.10	4.55	4.55	-	-	-	-
	제물포 경관계획 수립	0.50	0.25	0.25	-	-	-	-
	정주환경 개선	8.78	4.14	4.14	-	-	-	0.50
	주민역량강화	17.00	7.00	10.00	-	-	-	-
	스마트 마을플랫폼	3.00	1.50	1.50	-	-	-	-
	스마트 미디어플랫폼	19.30	9.65	9.65	-	-	-	-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	37.70	18.85	18.85	-	-	-	-
지자체 사업	**소계**	**95.36**	-	-	**95.36**	-	-	-
	SW 진흥단지 조성	69.00	-	-	69.00	-	-	-
	제물포 영스퀘어프로젝트	5.00	-	-	5.00	-	-	-
	아이사랑꿈터 사업	3.36	-	-	3.36	-	-	-
	숭의 목공예 창작공방 운영	8.00	-	-	8.00	-	-	-
	골목길 재생사업	10.00	-	-	10.00	-	-	-
	제물포지하도상가	비예산	-	-	-	-	-	-
공기업 투자사업	**소계**	**100.00**	-	-	-	**100.00**	-	-
	도시 · 건축스튜디오	67.00	-	-	-	67.00	-	-
	LH매입형임대주택(23호)	33.00	-	-	-	33.00	-	-

6 예산 집행 계획(변경없음)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704.14**	**-**	**100.21**	**274.70**	**207.56**	**90.77**	**30.90**
마중물 사업	**소계**	**508.79**	**-**	**34.61**	**227.10**	**179.18**	**57.38**	**10.52**
	국비	180.00	-	16.30	73.25	61.65	23.11	5.70
	지방비	180.00	-	15.16	74.75	61.72	23.65	4.73
	자체지방비	133.29	-	3.05	64.00	55.71	10.53	-
	공기업	-	-	-	-	-	-	-
	기금	15.00	-	-	15.00	-	-	-
	민간	0.50	-	0.10	0.10	0.10	0.10	0.10
	소계	**95.36**	**-**	**32.60**	**47.60**	**8.39**	**3.39**	**3.38**

구분		합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자체 사업	국비	-	-	-	-	-	-	-
	지방비	-	-	-	-	-	-	-
	자체지방비	95.36	-	32.60	47.60	8.39	3.39	3.38
	공기업	-	-	-	-	-	-	-
	기금	-	-	-	-	-	-	-
	민간	-	-	-	-	-	-	-
	소계	**100.00**	**-**	**33.00**	**-**	**20.00**	**30.00**	**17.00**
공기업 투자사업	국비	-	-	-	-	-	-	-
	지방비	-	-	-	-	-	-	-
	자체지방비	-	-	-	-	-	-	-
	공기업	100.00	-	*(33.00)	-	20.00	30.00	17.00
	기금	-	-	-	-	-	-	-
	민간	-	-	-	-	-	-	-

* 괄호 안은 기추진 사업비

7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변경없음)

○ 도시재생활성화의 비전과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 관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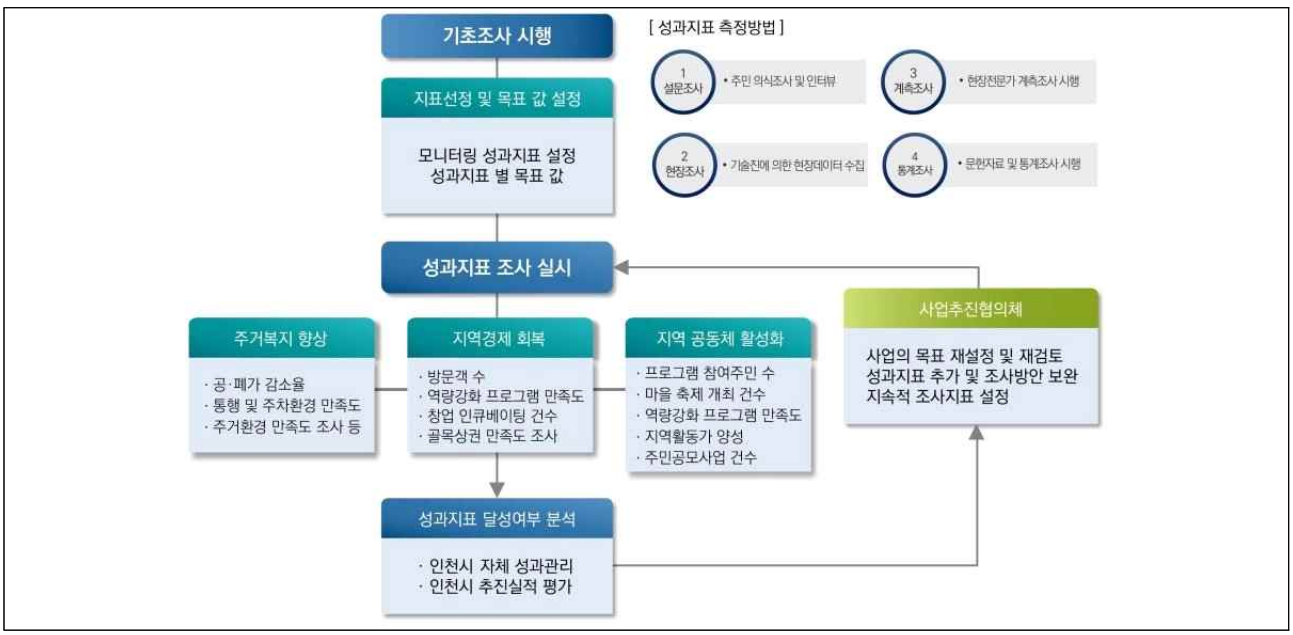

8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변경없음)

○ 해당 없음

9 기타사항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균형정책과(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 ☏ 440-4457)
- 제물포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미추홀구 석정로202번길 12-17, ☏ 888-820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7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58호(2023.10.4.)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연수구청 송도 별관 건립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 확보를 위하여 실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가. 개요: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상업업무시설용지	163,486.3	-	163,486.3	25.0	25.0	
일반상업	81,073.0	-	81,073.0	12.4	12.4	
복합지원	82,413.3	-	82,413.3	12.6	12.6	
산업유통시설용지	256,952.85	-	256,952.85	39.5	39.5	
연구시설	256,952.85	-	256,952.85	39.5	39.5	
관광위락시설용지	7,159.0	감) 7,159.0	-	1.1	-	
청소년수련시설	7,159.0	감) 7,159.0	-	1.1	-	
공공시설용지	224,160.05	-	231,319.05	34.4	35.5	
도로	199,562.85	-	199,562.85	30.6	30.6	
도로	196,426.15	-	196,426.15	30.1	30.1	
보행자도로	3,136.7	-	3,136.7	0.5	0.5	
공원	5,150.7	-	5,150.7	0.8	0.8	
육지부	5,150.7	-	5,150.7	0.8	0.8	
녹지	16,153.6	-	16,153.6	2.5	2.5	
주차장	3,292.9	-	3,292.9	0.5	0.5	
공공청사		증) 7,159.0	7,159.0	-	1.1	
합계	651,758.2	-	651,758.2	100.0	100.0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1>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 변경<붙임2>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부분: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신설

1)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TP1	공공청사	공공청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8-1번지 일원	-	증)7,159	7,159		

나)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TP1	공공청사	• 신설 - 위치 : 송도동 178-1번지 일원 - 면적 : 7,159㎡	• 연수구청 송도 별관 건립에 따른 공공청사 신설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일반상업용지(Cr): 변경없음

2) 복합지원용지(Sm : 변경없음

3) 연구시설용지(Sr): 변경없음

4) 청소년수련시설(Yt): 폐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지				비고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7,159.0	감)7,159.0	-		7,159.0	감)7,159.0	-	
Yt1	Yt1	7,159.0	감)7,159.0	-	Yt1	7,159.0	감)7,159.0	-	획지분할 가능

5)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6) 공공청사(Po1): 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고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증)7,159.0	7,159.0	-	-	증)7,159.0	7,159.0	
Po1	Po1	-	증)7,159.0	7,159.0	Po1	-	증)7,159.0	7,159.0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일반상업용지(Cr): 변경없음

2) 복합지원용지(Sm : 변경없음

3) 연구시설용지(Sr): 변경없음

4) 청소년수련시설(Yt): 폐지

5)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6) 공공청사(Po1): 신설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Po1	용도	허용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공공청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450% 이하
	높 이		○180m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접한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건축물의 주전면은 폭원이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으로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table>
<tr><th>도면
번호</th><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3">Po1</td><td>형 태</td><td>○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 설치시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 건물의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을 금지하며, 옥상조경 권장
○ 건물 외벽면실외기 노출을 금지하며, 담장설치는 불허함 (실험동주변은 생울타리 내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시가능)
○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 이내로 권장</td></tr>
<tr><td>색 채</td><td><table>
<tr><td>◉9.0YR 8.0/3.0</td><td>3.0RP 9.0/2.0</td><td>4.5P 8.0/1.5</td><td>5.0P 9.5/2.0</td><td>6.0P 9.0/0.5</td></tr>
<tr><td>★8.0YR 7.0/0.5</td><td>4.0YR 7.5/1.0</td><td>6.5PB 7.5/1.5</td><td>9.0PB 8.0/1.5</td><td>3.0Y 9.0/0.5</td></tr>
<tr><td>◉5.5R 6.5/2.0</td><td>◉3.0YR 7.0/2.0</td><td>4.5PB 7.5/2.0</td><td>◉5.0GY 7.0/1.5</td><td>7.0Y 8.5/1.0</td></tr>
<tr><td>★8.5YR 4.0/3.0</td><td>◉8.0YR 6.0/1.5</td><td>1.0G 5.5/1.5</td><td>◉7.5GY 7.0/3.5</td><td>4.0G 8.0/0.5</td></tr>
<tr><td>★5.0G 5.0/1.5</td><td>★6.0B 3.0/1.0</td><td>★0.5P 3.0/0.5</td><td>★7.5GY 5.5/6.0</td><td>★1.5G 3.5/4.0</td></tr>
</table></td></tr>
<tr><td>건축선</td><td>○ 건축한계선
- 6m 건축한계선: 20m 초과 35m 미만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35m 이상 간선가로변</td></tr>
</table>

주) 색채의 먼셀값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컬러 가이드 60』을 적용함
- ◉:액센트 컬러로의 사용을 권장하며, 넓은 면적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 ★:넓은 면적 사용시, 대단히 주의를 요하는 컬러

<붙임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 변경

1. 근거 규정: 변경없음
2. 조성토지 처분방법 및 가격기준: 변경없음
3.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 변경없음
4.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사업시행자): 변경

처분대상 토지				처분착수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분		면적(㎡) 기정	면적(㎡)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51,758.2	651,758.2	-		-		-		-	
상업업무용지	소 계	163,486.3	163,486.3	-		-		-		-	
	일반상업용지	81,073.0	81,073.0	2008		인천광역시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		협의금액	
	복합지원용지	82,413.3	82,413.3	2008		인천광역시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		협의금액	
산업시설용지	소 계	256,952.85	256,952.85	-		-		-		-	
	연구시설용지	73,875.1	73,875.1	2008		실수요자		수의계약, 추첨		조성원가이하	
		180,077.75	180,077.75	2008		(재)인천 테크노파크		공개분양		조성원가	
관광위락시설	소 계	7,159.0	-	-		-		-		-	
	청소년수련시설용지	7,159.0	-	2015	-	인천광역시	-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	-	조성원가	-
공공시설용지	소 계	224,160.05	231,319.05	-		-		-		-	
	도 로	199,562.85	199,562.85	준공시		관리기관		수의계약 또는 관리청 이관		조성원가	
	도 로	196,426.15	196,426.15								
	보행자전용도로	3,136.7	3,136.7								
	공원(육지부)	5,150.7	5,150.7								
	녹 지	16,153.6	16,153.6								
	주 차 장	3,292.9	3,292.9								
	공공청사	-	7,159.0	-	2024	-	인천광역시 연수구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	-	조성원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7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2호(2024.1.22.)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테크노밸리 부문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용지 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

- 유연한 건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Sd-3(1)과 Sd-3(2)에 대하여 공동건축(권장) 계획 수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가. 개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표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401,744.7	100.0	
주택건설용지	소계	273,085.1	11.4	
	공동주택	263,967.5	11.0	
	근린생활시설	9,117.6	0.4	
상업업무용지	소계	166,532.0	6.9	
	주상복합	12,958.0	0.5	
	일반상업	69,496.8	2.8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84,077.2	3.6	
산업시설용지	소계	801,756.1	33.4	
	지식기반서비스	94,525.6	3.9	
	지식기반R&D	18,476.2	0.8	
	지식기반제조업	376,190.8	15.7	
	테크노파크시설	312,563.5	13.0	
공공시설용지	소계	1,160,371.5	48.3	
	교육시설	102,525.7	4.3	
	공공업무	4,000.1	0.2	
	공원	195,127.0	7.9	
	녹지	173,694.3	7.2	
	공공공지	7,112.3	0.3	
	광장	981.4	0.1	
	공공주차장	29,634.2	1.2	
	체육시설	20,771.3	0.8	
	폐기물처리시설	1,600.0	0.1	
	도로	624,925.2	26.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2호(2024.1.22.)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매립지 2·4공구)
   나. 면적: 2,401,744.7㎡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00년 ~ 2020년(20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1>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테크노밸리 부문(변경)

(1)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Sd-3	14,818.2	1	2,483.2	-	공동건축(권장)
			2	2,469.2	-	공동건축(권장)
			3	1,090.9	-	
			4	1,239.5	-	
			5	2,431.3	-	
			6	2,423.4	-	
			7	1,439.1	-	
			9	1,241.6	-	

2) 테크노파크 부문(변경 없음)

3) 공공시설용지 부문(변경 없음)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테크노밸리 부문(변경)

가)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다) 주상복합택용지(변경 없음)
라) 일반상업용지(변경 없음)
마)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용지(변경)

■ 이면가로변 (Sd-3(1, 2, 5, 6))(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d-3 (1,2,5,6)	용도		○ 지정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차목 및 타목 중 안마시술소 제외)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중 가목(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 운동시설 중 가목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은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30% 이하로 함) -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Sd-3(1,2,5,6) : 300%이하
		높이		- (건축허가 이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경관자문단의 자문 또는 사전경관 협의를 통해서 결정)
		배치	기정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부터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권장)
			변경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부터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권장)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태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색채		○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 보조색 : 10YR ~ 2.5GY 6~8/2~4 ○ 강조색 : 10YR ~ 2.5GY 3~5/4~9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광2-12호선변 : 제1호건축선 (9m, 도로후퇴부 6m) - 대1-26호선, 대2-62호선변 : 제2호건축선 (6m, 도로후퇴부분3m) - 10, 15m 도로변 : 제3호건축선 (3m)

바) 지식기반서비스용지(변경 없음)

사) 지식기반R&D용지(변경 없음)

아) 지식기반제조업용지(변경 없음)

자) 교육시설용지(변경 없음)

차) 공공업무용지(변경 없음)

카)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타)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2) 테크노파크 부문: 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796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통지 사항을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 (월) ~ 2024. 4. 19. (금)

2.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업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백운종합건설 [안지민]	건축공사업 (04-0980)	인천시 중구 운남동로 44, 나동 301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효, 기술인력)	영업정지 5개월 (2024.2.15. ~ 7.14.)	2024.2.14.

※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3. 영업정지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하여, 영업정지처분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의2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영업정치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같은 법 제14조(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시기 바라며, 미통지 시 같은 법 제99조(과태료)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및 제96조(벌칙)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 032)440-3743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797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통지 사항을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 (월) ~ 2024. 4. 19. (금)

2.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업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의성건설㈜ [김남오]	건축공사업 (04-0724)	인천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22, 406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영업정지 5개월 (2024.03.18. ~ 08.17.)	2024.03.11.

※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3. 영업정지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하여, 영업정지처분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의2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영업정치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같은 법 제14조(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시기 바라며, 미통지 시 같은 법 제99조(과태료)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및 제96조(벌칙)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 032)440-3743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798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통지 사항을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 (월) ~ 2024. 4. 19. (금)

2.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업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상진종합건설㈜ [남헌기]	건축공사업 (18-0196)	인천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4, 7층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영업정지 5개월 (2024.03.18. ~ 08.17.)	2024.03.11.

※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3. 영업정지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하여, 영업정지처분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의2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영업정치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같은 법 제14조(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시기 바라며, 미통지 시 같은 법 제99조(과태료)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및 제96조(벌칙)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 032)440-3743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04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처분 통지 사항을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 (월) ~ 2024. 4. 19. (금)

2.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업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라희종합건설 [김대윤]	건축공사업 (04-1001)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 2층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등록말소	2024.2.7.

※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3. 등록말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 032)440-3743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10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처분 통지 사항을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 (월) ~ 2024. 4. 19. (금)

2.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업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디딤종합건설㈜ [김한현]	건축공사업 (10-2924)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60-21	3년 이내 동일한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효)	등록말소	2024.3.18.

※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3. 등록말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 032)440-3743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23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통지 사항을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 (월) ~ 2024. 4. 19. (금)

2.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업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명가토건㈜ [김민서]	건축공사업 (04-0881)	인천시 중구 샛골로 53-2, 2층 201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효)	영업정지 5개월 (2024.03.18. ~ 08.17.)	2024.3.11.

※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3. 영업정지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하여, 영업정지 처분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의2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영업정치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같은 법 제14조(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시기 바라며, 미통지 시 같은 법 제99조(과태료)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및 제96조(벌칙)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 032)440-3743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33호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 고 명 :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 대상 및 내용 :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 공고내용

- 납부기한 : 2024. 4. 30.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위반 대상(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납부 독촉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간 중가산금(1.2%)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8390).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34호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실시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 고 명 :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실시

○ 대상 및 내용 :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 압류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공고기간 : 2024. 4. 1. ~ 4. 15.

○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8390).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제물류주선업 1차 위반-경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업체에 대하여 1차 위반 - 경고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 년 4 월 1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	법인주소	예정된 행정처분 원인
1	215	㈜아시아플러스 인터내셔널	박종민	인천광역시 동구 보세로26번길 24-41 (만석동)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2-09-24) 등록기준미신고 (신고기한:2022-10-14)
2	262	㈜오성종합물류	오규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3, 106동 103호 (용현동, 용현대우아파트)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2-10-05)
3	364	㈜티오티해운항공	김창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 5층 (구월동, 대화빌딩)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2-06-17) 등록기준미신고 (신고기한:2022-06-07)
4	440	㈜호준종합물류	홍순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중로 9, 904호 (숭의동, 로터리빌딩)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12-06)
5	471	㈜지현	유경미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78, 404-2호(항동7가,백운빌딩)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2-04-12)

6	527	㈜지와이 인터네셔날	홍순철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172, 1층101호 (신흥동3가,엔케이지물류센타)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2-01-22) 등록기준미신고 (신고기한:2022-02-26)
7	534	제이에이치물류㈜	김영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49번길 59, 203호(신흥동1가, 에이원)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보험 만료일 : 2022-03-14) 등록기준 미신고 (신고기한 : 2022-03-27)
8	628	㈜한스글로발	임우성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135번길 7, 1층(답동)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2-08-22)
9	634	㈜해신해운항공	차에레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17번길 26, 305호 (용현동, 하나타운)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09-05)
10	646	호천해운항공㈜	김현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 37, 3층(용현동)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2-11-11)
11	687	㈜탑코리아 로지스틱스	권민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제이동 16층 1605호(송도동)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2-06-06)
12	719	전국윙카연합회㈜	이희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4, 4층 404호 (숭의동, 라하프빌딩)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3-01-21) 등록기준미신고 (신고기한:2022-01-28)
13	884	㈜가온쉬핑	조은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26층 브이431호 (송도동, 포스코타워-송도)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2-09-02)
14	907	대인해운항공㈜	이복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02, 502호 (옥련동, 영진프라자)	등록기준 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2-12-16)

2. 예정된 행정처분 : 2차 위반 - 사업정지 30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5.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

- 제 출 기 한 : 2024년 4월 29일 (월) 18:00 까지
- 의 견 제 출 방 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12층 물류정책과
- 담 당 자 : 물류정책과 엄용성(032-440-3842)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된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40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지방세징수법」제71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매대상 재산(자동차) : 45노6217 등 62대 (붙임목록 참조)

2. 공매일정

가. 입찰신청(등록)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4. 4. 17.(수) ~ 2024. 4. 24.(수) 14:00

○ 은행 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및 매각결정은 입찰 마감 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

나. 입찰참여 마감 : 2024. 4. 24.(수) 14:00

※ 1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입찰결과 발표 : 2024. 4. 25.(목) 14:00

○ 인천시보 및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게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클릭)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 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 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배분요구종기일 : 2024. 4. 19.(금) 18:00

5.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입찰서와 공매보증금은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을 변경하거나 취소 및 반환할 수 없음).

나. 선택 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액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주의 :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은행사정상의 미 입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 공매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 후 [공매+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 합계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 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매각결정일 부터 3일 이내**(공휴일이면 익 일)에 환불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하고자 하는 차량의 등록원부를 입찰자가 열람하여 ☎ 032-114 (인천본거지 차량만 가능)로 배출가스 등급 문의

2) 공매차량보관소에서 현물확인(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등급조회(배출가스번호)

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 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다.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제77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7.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 일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7일 이내)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한 입찰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예- 아파트 동, 호수가 없는 경우 등)

8. 매각예정가격: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 차 입찰최저가격**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가. 공매진행 중 또는 낙찰 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

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등을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고 배분계산서 작성 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수대금 납부 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하고 **낙찰** 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및 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 및 출고지연에 따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 부터 30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직권말소** 자동차는 **말소부활 → 검사 → 신규 등록** 등의 절차 이후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번호판분실신고확인서** 발급받아 말소 부활)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 및 유의사항,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공매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오토마트에서 작성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 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지방세법」의 취득, 등록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예) 매각결정통지서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 공제 시에도 비공개 (전 차주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

다.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소유권이전 시 기존 번호판으로 이전등록 하시고. 번호판이 없는 경우(분실)에는 해당등록 관청에서 신규(전국)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마. 입찰기간 내에 차량 유의사항!! 필독 및 현물확인!! 하시어 차량상태 및 등록기관 확인 후 입찰에 신중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바. 낙찰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최고납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 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판 미 부착 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

아. 차량 보관 장소 : (주)오토마트 보관소 (☏ 032-578-0442)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통합징수팀 자동차공매담당 (☏ 032-440-8445, 8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1	45노6217	에쿠스	2012	2,800,000	3회	2023-07-11
2	82어5642	토미1.8톤너클크레인	2010	20,000,000	3회	2023-07-18
3	50오7130	BMWGranTurismoEfficientDynamicsEdition	2015	9,600,000	3회	2023-07-25
4	138서9934	그랜저(GRANDEUR)	2018	10,400,000	3회	2023-08-10
5	14다5936	에쿠스(EQUUS)	2011	900,000	2회	2023-11-07
6	24노7665	제네시스(GENESIS)	2012	2,250,000	2회	2023-11-27
7	51너1069	BMW320i	2007	630,000	2회	2023-12-07
8	56두7553	모닝	2014	450,000	2회	2023-11-03
9	84구3399	코란도스포츠	2013	1,800,000	2회	2023-11-27
10	90로9980	봉고Ⅲ1.2톤	2013	1,800,000	2회	2023-11-29
11	인천85바1568	포터Ⅱ일렉트릭윙바디(PORTERⅡELECTRIC)	2021	17,100,000	2회	2023-12-12
12	01구7573	쏘렌토	2004	800,000	1회	2024-03-20
13	04조8412	E220BlueTEC	2016	6,000,000	1회	2024-02-29
14	04주3373	K9	2014	4,000,000	1회	2024-03-20
15	05소2708	그랜저(GRANDEUR)	2006	800,000	1회	2024-03-07
16	06가1598	액티언	2006	700,000	1회	2024-01-17
17	07너8674	쏘나타	2008	700,000	1회	2024-03-07
18	07부7476	쏘나타	2007	700,000	1회	2024-01-17
19	08가7417	뉴클릭	2006	500,000	1회	2024-01-17
20	08라0198	모닝	2016	2,000,000	1회	2024-03-22
21	10수3291	그랜져	2016	3,500,000	1회	2024-03-15
22	11주2664	싼타페	2016	6,000,000	1회	2024-02-20
23	12오3965	카이엔S	2012	9,000,000	1회	2024-03-11
24	15무6792	코란도c	2014	3,000,000	1회	2024-03-14
25	16모9826	토러스	2011	1,000,000	1회	2024-03-19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26	183거8224	Mercedes-AMGS634MaticL	2016	20,000,000	1회	2024-03-11
27	18로0989	쏘렌토	2016	9,000,000	1회	2024-03-20
28	18오3644	윈스톰2.0S디젤	2008	800,000	1회	2024-03-19
29	19나2029	크루즈2.0디젤	2014	1,200,000	1회	2024-03-14
30	19나7151	엑센트	2014	1,000,000	1회	2024-03-19
31	21모7328	i30cw	2009	800,000	1회	2024-03-06
32	24도6632	싼타페	2015	5,000,000	1회	2024-03-13
33	28주0647	크루즈1.4	2016	3,000,000	1회	2024-02-07
34	290다7303	k7	2015	5,000,000	1회	2024-03-05
35	31두1408	SM7	2008	800,000	1회	2024-03-20
36	31조2493	재규어 XF 2.0GTDI	2014	2,000,000	1회	2024-03-21
37	33우5780	카니발	2010	1,000,000	1회	2024-03-21
38	34우6877	테라칸	2004	900,000	1회	2024-03-13
39	35주0694	그랜저	2017	6,000,000	1회	2024-03-06
40	377소7371	A5Sportback2.0TDIquattro	2014	3,500,000	1회	2024-02-29
41	41저4878	코란도C	2011	900,000	1회	2024-03-13
42	43다7805	에쿠스	2005	900,000	1회	2024-03-13
43	43더3018	투싼	2012	1,200,000	1회	2024-02-29
44	49더3554	에쿠스	2002	800,000	1회	2024-03-22
45	49우1490	싼타페	2007	1,000,000	1회	2024-03-05
46	51우6214	프라이드	2008	700,000	1회	2024-03-21
47	58나4336	그랜저	2007	800,000	1회	2024-03-05
48	59마2559	라세티1.6DOHC	2009	800,000	1회	2024-03-14
49	59어6895	K5	2015	5,500,000	1회	2024-03-06
50	63다7940	모닝	2015	1,000,000	1회	2024-02-29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51	63러6823	SM520LPG	2003	700,000	1회	2024-03-07
52	63루7251	싼타페	2013	3,000,000	1회	2024-03-22
53	66고9118	SM5	2007	700,000	1회	2024-03-14
54	72머4094	그랜드스타렉스(GRANDSTA REX)	2009	900,000	1회	2024-01-17
55	72부0415	그랜드카니발	2006	1,000,000	1회	2024-03-14
56	76가2625	로디우스	2005	800,000	1회	2024-03-15
57	827버1933	포터Ⅱ	2022	14,500,000	1회	2024-03-11
58	83저9204	봉고Ⅲ1톤	2013	2,500,000	1회	2024-02-07
59	85어4637	봉고 프론티어	2001	800,000	1회	2024-01-17
60	91러8204	CKMINIVAN	2016	1,200,000	1회	2024-02-06
61	95구0453	그랜드 스타렉스	2019	8,000,000	1회	2024-03-19
62	92구1830	코란도 스포츠	2018	6,000,000	1회	2024-03-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4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태성환경연구소 인천분석센터
2. 대표자 : 김석만, 주미정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스마트밸리E동 1108호-1110호(송도동)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악취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악취 제69호
6. 등록일자 : 2024. 3. 27.
7. 측정대행 항목 : 복합악취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49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인천가족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실시계획인가 고시[인고 제2023-314호(2023. 12. 11.)]에 따라 공사완료한 도시계획시설[공원명: 인천가족공원, 사업명: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 4.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54-10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 명칭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공원 면적 : 1,497,148㎡

○ 사업 면적 : 202,285.1㎡

○ 사업 내용(규모) : 봉안당 건립, 자연장지 조성, 산림복원 등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기간 : 2017. 7. 3. ~ 2024. 4. 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52호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건에 대하여 법원결정(과태료 집행위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 고 명 :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 대상 및 내용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 공고내용

- 부과일자 : 2024. 3. 12.
- 납부기한 : 2024. 4. 30.
- 과태료 부과 대상자께서는 납부기한까지 우리시 대기보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부과 및 60개월 간 중가산금(1.2%)이 부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3552).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54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계절관리기간('23. 12월~ '24. 3월)에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고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대상 및 내용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 공고내용

-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정된 과태료(10만원/일)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납부 가능)
- 아울러, 다음에 따른 단속제외 대상 차량에 해당될 경우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24. 4. 26.(금)**

□ **단속제외 대상**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

. 긴급자동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 **한시적 단속제외 (※ 제5차 계절관리기간('23.12.1.~'24.3.31.)에 한하여 제외)**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과태료 제외

. 소상공인확인서에 **차량번호**, **연락처** 기재(영업용 지입차량은 지입위수탁계약서 함께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문의 : ☎ 국번없이 1357

□ **의견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5층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 **(팩스)** 032-440-8749 / **(이메일)** a4408749@korea.kr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6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령위반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112186	주식회사 다예테크넷 (김창호)	인천 동구 방축로 105 18동 331호(송림동, 인천산업유통단지)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과징금 600만원**

인천광역시공고 2024-864호

2024년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6항에 의거하여 ‘2024년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1. 심의일시 : 2024. 3. 28.(목) 14:00
2. 심의장소 : 인천광역시청 영상회의실
3. 심의작품 : 총 8작품
4. 심의결과 : 가결 5작품(원안 4, 권고 1), 부결 3작품
5. 작품별 심의결과 : 첨부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기반과(☎ 032-458-7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작품별 심의 결과>

□ 8작품 중 가결 5작품 (원안 4, 권고 1), 부결 3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송도동155-1	조각	FLORESSANCE			○	
	2		조각	RADIXSSANCE			○	
2	3	운남동 1710-2 (A26BL)	조각	호수에 물결이 일다		○		
	4		조각	Behind clouds		○		
3	5	송도동 397-2 (A16BL)	조각	Unity		○		
4	6	강화군 선원면 창리 456번지 외	조각	조화(Balance)			○	
	7		조각	나빌레라		○		
5	8	부평구 청천동 422	조각	Guardian		○		권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4-33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가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10일로 확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15일로 확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25일로 확대, 30년이상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휴가일수 분할 횟수를 확대 (안 제23조7항)

나.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부여 (안 제23조1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동진(전화번호 032-440-2507,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cdj072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4회”를 “6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회”를 “2회”로, “2회”를 “3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일”을 “3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제2항을 따르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받을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제2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한다.	⑦ ----------6회---------- --- 2회,---------- 3회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4. ---------- 30일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⑭ < 신 설 >	⑭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제2항을 따르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김학범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4-34호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개관을 위한 소장 가치가 높은 미술작품 수집의 체계적 절차 마련과 작품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품 수집 절차를 위한 기증 및 수증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로 조문 명확화. (안 제2조제3호)

나. 공정하고 투명한 작품수집을 위한 위원 임기 명시 및 체계적 절차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제3항～제4항, 제6조제3항)

다. 작품 수집 과정에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안 제9조제3항～제5항)

라. 소장가치가 높은 작품 수집을 위해 전문가 등이 미술작품을 제안하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

별지 제12호 서식(진품보증서)

제13호 서식(진위확인서)

제14호 서식(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문화기반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장경옥(☎ 032-458-7242, fax 032-440-8721, 전자메일 pearlkaeu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9층 문화기반과

(2) 연락처 : 전화) 032-458-7242, FAX) 032-440-8721,

전자메일 pearlkaeun@korea.kr

라.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규정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방법으로 소장하는”을 “방법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소장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에”를 “시에”로 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 일체를 시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란 이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작품의 소유권 일체를 시가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치평가위원회 위원은 회의 개최시 위촉되고, 해당 회의 종료시 해촉된다.

④ 선정된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 점수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결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외부가격전문가로”를 “외부가격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은 회의 개최시 위촉되고, 해당 회의 종료시 해촉된다.

④ 선정된 작품에 대한 가격평가는 각 위원의 평가금액중 최고, 최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기증”을 “기증, 기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전환의 경우 수집심의위원회에서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수집하려는 작품의 작가에게 진품보증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진위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진위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수집이 결정된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수집작품의 제안) ① 소장가치가 있는 수집 작품의 제안은 내부 학예연구직 공무원과 50명 이내 외부 근·현대 미술 전문가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가는 본인의 소장 작품에 대한 구입 제안을 할 수 없다.

③ 수집대상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실견(實見)과 충분한 조사·

연구 등에 기초한 수집 작품 제안서(별지 7호 서식)를 작성하여 작품의 도판(圖版), 작가 약력등의 관련 자료와 함께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기증작품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된 감정기관의 진위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진 품 보 증 서

작가명	
작품명	
제작년도	
재료 및 기법	
규격(단위:cm)	
작품 사진	

상기 작품은 본인_____의 진품임을 보증합니다.

. . .

성명 : _____(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진 위 확 인 서

작 가 명		작 품 명	
제작년도		재료및기법	
규 격 (단위: cm)		작품 소장자	(인)
작품 앞면 이미지		작품 뒷면 이미지	

위 작품은 진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연락처	
작가와의 관계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	
작가와의 관계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	
작가와의 관계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	
작가와의 관계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	
작가와의 관계		주 소	

※ 작가와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배우자와 직계비속 등 모두 포함) ※ 칸이 부족할 경우 이면 사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

◎ 인천광역시는 소장작품 수집을 위한 「**진위확인서**」 작성과 관련 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_____(서명), 동의함( ) 동의안함( ) _____(서명),
동의함( ) 동의안함( ) _____(서명), 동의함( ) 동의안함( ) _____(서명),
동의함( ) 동의안함( ) _____(서명)

※ 진위확인서와 동일하게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

본인은 인천광역시(향후 인천시립미술관)가 소장작품으로 수집하는 아래 작품의 저작권자로서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해당 작품의 미술저작물 이용을 허락합니다.

< 작품내역 >

유 형	관리번호	작 가 명	작 품 명	제작년도	규 격(cm)
				계	점

< 저작권자 >

작가 생년월일			
저작권자	(인)	연락처	
작가와의 관계		주 소	
저작권자	(인)	연락처	
작가와의 관계		주 소	
저작권자	(인)	연락처	
작가와의 관계		주 소	
저작권자	(인)	연락처	
작가와의 관계		주 소	

※ 작고작가일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배우자와 직계비속 등 모두 포함) ※ 칸이 부족할 경우 이면 사용

년 월 일

□ 이용허락 범위 및 조건

- 인천광역시에서 기획·발행하는 출판물 및 도록(圖錄), 문화상품 제작 등
  - 미술관 홍보, 교육프로그램 교재, 연구논문집, 상설·기획전시 및 소장품 도록 등
  - 제작한 문화상품을 유상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 판매가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상호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여 지급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등
  - 인천광역시(향후 인천시립미술관)가 제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 인천광역시의 작품사진 및 원판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촬영 등 저작권정보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열람의 승낙
- 저작권자가 다수일 경우 모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서 또는 저작권의 대표자가 있을 경우 대표자외 나머지 저작권자의 위임장 제출
- 위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은 인천광역시에 대한 위의 저작물 이용허락 내용이 양도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양도해야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사본 1통을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 인천광역시에 제출

인천광역시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 경매구입, 기증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3. “기탁”이란 작품을 한시적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방법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소장하는 ----. 3. “기증”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전시·연구·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 일체를 시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란 이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작품의 소유권 일체를 시가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4. ---------- 시에 ----------.
제4조(작품가치평가위원회) ①~② (생 략) <신 설>	제4조(작품가치평가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가치평가위원회 위원은 회의

	개최시 위촉되고, 해당 회의 종료시 해촉된다.
<신 설>	④ 선정된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 점수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결정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작품가격평가위원회)	제5조(작품가격평가위원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가격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외부가격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외부가격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로 --------
<신 설>	③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은 회의 개최시 위촉되고, 해당 회의 종료시 해촉된다.
<신 설>	④ 선정된 작품에 대한 가격평가는 각 위원의 평가금액중 최고,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작품수집심의위원회)	제6조(작품수집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9조(수집 절차) ① 작품의 수집	제9조(수집 절차) ① ----------

은 구입, 경매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 기증, 기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리전환의 경우 수집심의위원회에서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수집하려는 작품의 작가에게 진품보증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진위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진위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수집이 결정된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10조(수집작품의 제안) ① 소장가치가 있는 수집 작품의 제안은 내부 학예연구직 공무원과 50명 이내 외부 근·현대 미술 전문가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가는 본인의 소장작품에 대한 구입 제안을 할 수 없다. ③ 수집대상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실견(實見)과 충분한 조사·연구 등에 기초한 수집

	작품 제안서(별지 7호 서식)를 작성하여 작품의 도판(圖版), 작가 약력등의 관련 자료와 함께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작품 기증) ① ~ ③ (생 략)	제12조(작품 기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기증작품의 진위여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된 감정기관의 진위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2조 ~ 제15조 (생 략)	제13조 ~ 제16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4-12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소통·배려 감사 확대 및 감사수용성 제고를 위한 감사 절차 및 감사 결과 처리 기준 정비

다. 복잡·다각화되는 감사환경에 대응하고 자체감사활동의 실질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한 명확한 감사 절차 등 개정

2. 개정근거

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다.「공공감사기준」

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마.「적극행정 운영규정」

바.「공공기관 감사업무 매뉴얼」

3. 주요내용

가. 감사대상자 기피신청 근거 마련 (안 제14조)

나. 확인서 징구 시 감사대상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안 18조)

다. 소통·배려의 감사 확대를 위한 경미한 업무 착오 관련 '현지 주의·시정' 조치 근거 마련 (안 제20조)

라. 복잡화, 다각화되는 감사환경에 부합하는 감사결과 조치를 위한 다양한 내・외부전문가의 처분 심의과정 참여 확대(안 제21조)

- 감사관 내부위원 외 처분 사안 관련 본청 담당부서 공무원 및 시민 감사관 참여 확대

마. 감사대상기관의 전보대상자 신분조치 등 통보 절차 정비 (안 제22조)

바. 기타 문구 및 별지 번호 개정

4. 의견제출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 032-420-8142, 팩스) 032-420-8169
- E-mail: twity27@ice.go.kr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1]

5. 일부개정규칙안: [붙임2]

6.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붙임3]

[붙임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감사관) 귀중

[붙임2]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의견 제시 요청)”을 “(사전컨설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를 요청”을 “의견을 구하는 사전컨설팅을 신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담당공무원”을 “감사담당공무원 등”으로, “회피를”을 “회피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담당공무원이”를 “감사담당공무원 등이”로, “감사담당공무원을”을 “감사담당공무원 등을”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7호의 답변서를 받아 감사처분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경미한”을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미한”으로, “제1항제3호의 시정”을 “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단순한 시정, 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고의가 아닌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3.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사안의 정도가 현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제3항 본문 중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를 “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한 본청 업무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감사관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중 “감사관이 지명한다”를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사관 소속 위원 중 심의 안건 담당 사무관(서기관)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제외한다.

제21조제7항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8호”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처분대상자가 다른 기관(부서)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7호”를 “별지 제9호”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별지 제8호”를 “별지 제10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별지 제9호”를 “별지 제11호”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2조 중 “별지 제10호”를 “별지 제12호”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별지 제11호”를 “별지 제13호”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별지 제12호”를 “별지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3호”를 “별지 제15호”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회피 신청서”를 “회피(기피) 신청서”로 한다.

별표 2 중 “회피”를 “회피(기피)”로 한다.

별표 7을 별표 9로 한다.

별표 8을 별표 10으로 한다.

별표 9를 별표 11로 한다.

별표 10을 별표 12로 한다.

별표 11을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12를 별표 14로 한다.

별표 13을 별표 1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회피(기피) 신청서

<table>
<tr><td colspan="2" rowspan="2">신 청 인</td><td>소 속</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직 위</td><td></td><td>성 명</td><td></td></tr>
<tr><td rowspan="4">감사
대상</td><td>일정</td><td colspan="4"></td></tr>
<tr><td>기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기피
당사자
(기피신청자만
작성)</td><td>성명</td><td colspan="3"></td></tr>
<tr><td>소속</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회피(기피) 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년 월 일

신청인 (서명)</td></tr>
</table>

【별지 제6호 서식】

질 문 서

제 목 : ○○○○○의 추진에 관한 사항

질 문 사 항

년 월 일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감사반장 ○○○ (인)

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감기관의 애로사항, 의견 등을 적극 경청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서를 배부하오니 다음 사항에 대하여 . . .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확인서를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건 [별첨] 확인서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2. 이 건 앞으로의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처분 조치 시 기타 확인 사항에 대해 질의 추가 가능

[별첨] : 확인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답 변 서

제 목 : ○○○○○○의 추진에 관한 사항
답 변 사 항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감사반장 ○○○귀하 기관명 : 직・성명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이 건 [별첨] 확인서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2. 이 건 앞으로의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3. 기타 추가 질의
답)

【별지 제8호 서식】

감사처분심의회 심의결과 결정문

○○○ 기관(학교)의 종합(부분,기강,민원)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감사처분심의회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함

일련번호	심의안건(제목)	피 감 사(통보)기관	감사기간	주요지적내용	심의결과	비고

【별지 제9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감사결과 미결사항 처리부

기 관 명 :

구분		관련문서번호 (시행일자)	건명 및 내용	결 재	
				담당 서기관 (사무관)	감사관
미결사항 및 처리대책	미결사항				
	처리대책				
처리결과					

【별지 제11호 서식】

외부기관 감사(수사) 수감사항 보고

우리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1. 실시기관(부서) :

2. 실시구분(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수사, 기타) :

3. 실시기간(또는 예정기간) :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

5. 대상 업무(또는 대상자) :

6. 발견된 사항 :

7. 기 타 :

기 관 장

【별지 제12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신청 안내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신청인 소속 기관의 장 의견을 첨부하여 면책심사 신청

2. 신청기간: 감사가 종료 된 날부터 해당 감사결과 처분 통보 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별지 제13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제33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별지 제14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감 사 기 관 명		감사 기간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안)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검토의견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종 합 의 견			

【별지 제15호 서식】

면책심사결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심 사 결 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견 제시 요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전컨설팅) ① ---------- 의견을 구하는 사전컨설팅을 신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생 략)	제12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민원 등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그렇지 않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감사담당공무원의 회피	제14조(감사담당공무원의 회피

현 행	개 정 안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감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공무원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 등---------- 회피 등을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감사담당공무원 등이 ---------- 감사담당공무원 등을 ----------.
제18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18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7호의 답변서를 받아 감사처분 시 고려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② (생 략) ③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20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미한 --- 시정----------. 1.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단순한 시정, 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고의가 아닌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3.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사안의 정도가 현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감사처분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감사관 소속 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감사관이 지명한 기술직·전산직공무원·시민감사관 중 1명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감사처분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한 본청 업무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감사관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④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총괄서기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이 지명한다.	④ ----------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회는 안건의 제출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⑥ ----------. 다만, 감사관 소속 위원 중 심의안건 담당 사무관(서기관)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제외한다.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회 결정문을 작성한다.	⑦ ---------- 별지 제8호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22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22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처분대상자가 다른 기관(부서)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3조(재심의 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제23조(재심의 신청 등) ① ----------

현 행	개 정 안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별지 제9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감사의 사후관리) ① ~ ④ (생 략)	제26조(감사의 사후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결과 처분사항 중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미결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10호 ----------.
제29조(외부기관 수감보고) 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외부기관 수감보고) ① ---------- 별지 제11호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제31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렇지 않다.
제32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실시 전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2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 별지 제12호 ----------
제33조(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제33조(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3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	제34조(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

현 행	개 정 안
① (생 략)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면책신청 심사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14호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지 제15호 ----------. 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4-161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2024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안 제2조)

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2024년 4월 4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학교

설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jsa1015@ice.go.kr

2) 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3) 팩스: 032-420-6563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032-420-65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1”

5. 개정조례안: “붙임2”

< 붙임1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학교설립과장) 귀하

< 붙임2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 교 설 립 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657명”을 “3,66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은 “3,329명”을 “3,331명”으로, 같은 조 제3호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은 “319명”을 “32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662**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334**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93				
전문경력관	6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 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32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1		22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657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329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319명	제2조(정원의 총수) ---------- 3,662명----------. 1. (현행과 같음) 2. ---------- : 3,331명 3. ---------- : 322명

[별표 3]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657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332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91				
전문경력관	6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319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1		22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88				

[별표 3]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662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334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93				
전문경력관	6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32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1		22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1				

[붙임 3]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발췌사항

관계법령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공공감사기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 「공공기관 감사업무 매뉴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3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제25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세부사항 등) ①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칙 및 제1항에 따라 감사원이 정한 세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등이 자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답변한다.

「공공감사기준」

[시행 1999. 8. 28.] [감사원규칙 제137호, 1999. 8. 28., 제정]

제8조 (독립성) ①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자체감사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상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의 의결기관과 집행부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
2. 감사결과를 소속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게 자유로이 보고
3. 자체감사인의 임용, 교육훈련, 승진, 보수등에 관해 실적에 입각한 인사제도의 확립
4. 자체감사기구와 자체감사인에 대한 내부평가, 심사분석, 목표관리등 성과관리제도의 독자적 운영
⑧감사기관과 감사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및 정보에 대해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가 소속된 시ㆍ도의 감사기구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의 경우(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6조·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관 감사업무 매뉴얼」

(2018. 2월,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공공감사정책과 발행)

제4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2. 감사보고서 작성

(5)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감사원 권장사항으로 자율 운용)

□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가급적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부서 소속 감사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 담당부서 직원을 참석시킬 수 있음(심의위원은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

(8) 처분요구 종류별 작성 요령

○ 관련자를 기재할 때에는

❶ 결재자를 모두 나열하거나 질문 답변서에 기재된 관련자를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관련자 소명을 들어 책임소재를 검토한 후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을 골라서 기재

❷ 관련자의 현재 소속, 직, 성명을 기재하되, 처분 행위 시 소속을 ( ) 안에 표시하고 직급이 낮은 사람부터 기재, 퇴직자는 관련자에서 제외하고 그 사실을 참고사항에 기재

❸ 관련자가 다른 관계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

조치할 사항 □□□장은

①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경고 · 훈계)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경고 · 훈계)처분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4-162호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수정하고,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련된 조문이 교육비특별회계 관련 지침과 달라 이를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

나. 수당은 교육비특별회계 관련 지침에 따라 지급함(안 제3조제1항)

다. 여비는「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함(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2024년 4월 22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학교설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saiiy10@ice.go.kr

2) 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3) 팩스: 032-420-6563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032-420-65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1”

5. 개정조례안: “붙임2”

< 붙임1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학교설립과장) 귀하

< 붙임2 >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 교 설 립 과)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④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학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

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

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법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1조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 중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역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군 · 구

인천광역시미추홀구공고 제2024-603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63호(2022.06.13.)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총 4개 존치관리구역(미추4,5,6,7구역)의 정비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립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4. 1.(월)~2024. 4. 18.(목) ※ 공휴일(7일,10일,14일) 제외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과(☏ 032-880-7947)

다. 공람사유 : 미추4,5,6,7구역 정비사업 재추진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함

라. 공람내용 :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 목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변경)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미추홀구 주안2,4동 일원	997,076.2	감) 5,714.7	991,361.5	· 미추4,5,6,7구역 촉진구역 지정 및 일부 구역 경계조정 · 낙후된 도심지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의 회복

2. 재정비촉진사업의 목표 연도(변경)

○ 기준 연도 : 2008년

○ 목표 연도 : 203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 금회 지정되는 촉진구역의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촉진지구의 계획 방향, 지침 등의 제시로 촉진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도모

○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로 촉진지구의 효율적인 개발 추진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997,076.2	감) 5,714.7	991,361.5	100.0	
주거용지		591,274.4	증) 56,056.6	647,331.0	65.3	
상업/업무용지		85,406.0	감) 14,227.0	71,179.0	7.2	
근린생활시설용지		-	증) 587.4	587.4	0.1	미추7구역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17,085.9	감) 48,685.2	268,400.7	27.0	
	공공청사	910.7	증) 1,840.7	2,751.4	0.3	
	학 교	35,280.2	증) 3,553.7	38,833.9	3.9	유치원 신설
	문화시설	4,000.0	감) 4,000.0	-	-	폐지
	공 원	51,534.4	증) 5,187.0	56,721.4	5.7	
	녹 지	4,775.2	증) 2,516.4	7,291.6	0.7	
	시 장	3,541.8	감) 3,541.8	-	-	폐지
	미래공공용지	2,892.8	감) 251.3	2,641.5	0.3	
	주 차 장	1,850.0	감) 1,850.0	-	-	4개소 폐지
	도 로	212,300.8	감) 52,716.0	160,160.9	16.1	
기타 시설 용지	소 계	3,309.9	증) 553.5	3,863.4	0.4	
	유치원	949.1	-	949.1	0.1	일반 매각
	종교용지	2,360.8	증) 553.5	2,914.3	0.3	

주) 공원시설과 중복 결정한 저류시설 7,670.3㎡, 문화시설 1,340㎡은 미 표기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 인구 및 세대수 계획 : 42,576인(증 19,848인) / 17,421세대(증 8,375세대)

구역명			현황				계획				
			인구(인)	인구밀도(인/ha)	거주세대(세대)	세입세대(세대)	인구(인)	인구밀도(인/ha)	세대(세대)		
									계	분양	임대
촉진구역 총계		기정	10,457	301	4,314	2,516	22,728	592.5	9,046	8,871	175
		변경	26,490	305	10,832	4,703	42,576	489.4	17,421	16,817	604
도시개발	1구역	기정	79	32	36	28	2,109	805.9	864	864	0
재개발	소계	기정	9,697	218	3,977	2,270	20,619	416.3	8,182	8,007	175
		변경	26,411	255	10,796	4,474	40,467	538.3	16,557	15,953	604
	미추1구역	기정	2,170	366	896	480	3,329	514.8	1,321	1,291	30
	미추4구역	기정	-	-	-	-	-	-	-	-	-
		변경	2,149	314	914	681	3,479	508.7	1,468	1,394	74
	미추5구역	기정	-	-	-	-	-	-	-	-	-
		변경	4,055	283	1,655	858	7,015	489.0	2,960	2,804	156
	미추6구역	기정	-	-	-	-	-	-	-	-	-
		변경	3,257	343	1,344	766	4,448	467.8	1,877	1,782	95
	미추7구역	기정	-	-	-	-	-	-	-	-	-
		변경	3,246	306	1,333	873	4,906	462.9	2,070	1,966	104
	미추8구역	기정	3,399	287	1,395	799	7,119	602.1	2,825	2,773	52
	주안1구역	기정	4,128	319	1,686	991	7,454	575.2	2,958	2,892	66
		변경	7,454	575	2,958	-	7,454	575.2	2,958	2,892	66
	미추C구역	기정	278	119	122	92	905	389.6	359	350	9
	주안11구역	기정	403	185	179	126	1,812	834.7	719	701	18

주) 금회 지정되는 미추4,5,6,7구역의 계획인구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세대당 2.37인 적용
주) 인구수용 대상 구역이 아닌 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구역의 계획인구는 기재하지 않음
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존치관리구역의 계획인구는 현황인구 준용
주) 주안1구역은 준공내용 반영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기정	면적(㎡) 변경	구성비(%)	
도 로	193,368	17.0	212,300.8	160,160.9	16.1	•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면적 변경
주차장	8,086	0.7	1,850.0	0.0	0.0	• 촉진구역 지정(5,7구역)에 따른 시설 폐지
공원녹지	3,225	0.3	56,309.6	64,013.0	6.4	•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면적 변경
문화시설	-	-	4,000.0	0	0.0	• 입지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
공공청사	2,054	0.2	910.7	2,751.4	0.3	• 파출소 부지 증설
학교시설	17,763	1.6	35,280.2	38,833.9	3.9	• 국・공립유치원 신설
시장	6,918	0.6	3,541.8	0	0.0	• 촉진구역지정(6구역)에 따른 시설 폐지
미래공공용지	1,476	0.1	2,892.8	2,641.5	0.3	• 파출소 부지 증설에 따른 면적 변경
합 계	232,890	20.5	317,085.9	268,400.7	27.0	

주) 미추4,5,6,7존치관리구역의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 변경

주) 공원시설과 중복 결정한 저류시설 7,670.3㎡ 문화시설 1,340㎡은 미 표기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 분		현황		계획				비고
		개소	면적(㎡)	개소 기정	개소 변경	면적(㎡) 기정	면적(㎡) 변경	
합 계		2개소	3,225	15개소	16개소	56,309.6	64,013.0	
공원	소계	2개소	3,225	12개소	12개소	51,534.4	56,721.4	
	근린공원	-	-	-	-	-	-	• 공원녹지체계 조정에 따른 재배치 ※저류시설 : 7,670.3㎡ 문화시설 : 1,340㎡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2개소	3,225	11개소	11개소	50,194.4	55,381.4	
	문화공원	-	-	1개소	1개소	1,340.0	1,340.0	
	소공원	-	-	-	-	-	-	
녹지	소계	-	-	3개소	4개소	4,775.2	7,291.6	
	완충녹지	-	-	1개소	2개소	2,750.8	5,261.8	• 공원녹지체계 조정에 따른 재배치
	경관녹지	-	-	2개소	2개소	2,024.4	2,029.8	

5) 교통계획(변경) : 공람장소 비치도서로 갈음

6) 경관계획(변경) : 공람장소 비치도서로 갈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사업유형	구역명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기 정		997,076.2	100.0	
		변 경		991,361.5		
촉진구역 (27개소)	재개발사업 (9개소)	미추1구역		64,671.7	6.5	
		미추4구역		68,384.3	6.9	신 설
		미추5구역		143,452.5	14.5	신 설
		미추6구역		95,085.3	9.6	신 설
		미추7구역		105,974.4	10.7	신 설
		미추8구역		118,244.7	11.9	
		주안1구역		129,593.4	13.1	
		미추C구역		23,230.0	2.3	
		주안11구역		21,709.0	2.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1구역		26,168.0	2.6	
	도시계획시설사업 (17개소)	미추2-1구역		6,268.0	0.6	
		미추2-2구역		3,793.0	0.4	
		미추2-3구역		4,147.0	0.4	
		미추2-4구역		2,312.0	0.2	
		미추2-5구역	기 정	12,011.0	0.4	6구역 및 2구역 일부편입
			변 경	4,517.0		
		미추3-1구역		3,574.2	0.4	
		미추4-1구역	기 정	7,153.0	0.7	4구역 및 7구역 일부편입
			변 경	7,078.0		
		미추4-2구역	기 정	5,873.0	0.1	4구역 일부편입
			변 경	1,572.0		
		미추4-3구역	기정	6,715.0	-	4구역 편입
			폐지	-		
		미추4-4구역		993.0	0.1	
		미추5-1구역		11,633.5	1.2	
		미추5-2구역		1,303.0	0.1	
		미추5-3구역	기정	9,188.0	0.5	5구역 일부편입
			변경	4,793.5		
		미추5-4구역	기정	6,899.0	-	5구역 편입
			폐지	-		
		미추5-5구역	기정	11,556.0	-	5구역 편입
			폐지	-		
		미추5-6구역	기정	986.0	-	5구역 편입
			폐지	-		
		미추6-1구역		4,814.0	0.5	
		미추6-2구역	기정	8,195.0	-	6구역 편입
			폐지	-		
		미추6-3구역	기정	4,000.0	-	6구역 편입
			폐지	-		

구 분	사업유형	구역명		면 적(㎡)	구성비(%)	비 고
촉진구역 (27개소)	도시계획시설 사업 (17개소)	미추7-1구역	기정	3,650.0	0.4	7구역 일부편입
			변경	3,638.3	0.4	
		미추7-2구역	기정	5,925.0	-	7구역 편입
			폐지	-		
		미추7-3구역	기정	3,149.0	-	7구역 편입
			폐지	-		
		미추7-4구역	기정	14,800.7	0.7	6구역, 7구역 일부편입
			변경	6,683.8		
		미추7-5구역	기정	13,808.0	0.2	7구역 일부편입
			변경	1,736.6		
		미추A-1구역		5,123.0	0.5	
존치지역 (6개소)	존치관리구역 (6개소)	존치1관리구역		3,992.0	0.4	
		존치2관리구역		2,674.0	0.3	
		존치5관리구역		4,008.0	0.4	
		존치6관리구역		1,507.0	0.2	신설
		미추2존치관리구역	기정	89,065.0	9.3	미추2-5구역 일부편입
			변경	91,783.3		
		미추4존치관리구역	기정	57,789.0	-	촉진(재개발) 구역으로 전환
			폐지	-		
		미추5존치관리구역	기정	118,751.0	-	촉진(재개발) 구역으로 전환
			폐지	-		
		미추5-1 존치관리구역	기정	3,533.0	-	5구역, 6구역 편입(도로)
			폐지	-		
		미추6존치관리구역	기정	75,696.0	-	촉진(재개발) 구역으로 전환
			폐지	-		
		미추7존치관리구역	기정	83,178.0	-	촉진(재개발) 구역으로 전환
			폐지	-		
		미추A존치관리구역		16,904.0	1.7	

주) 완료 시점에 존치관리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촉진지구 제외 검토 및 촉진지구·계획 변경을 수립하고자 함

주) 주안1구역은 준공 사항 반영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

용 도 지 역		기 정		증감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면적(㎡)	구성비(%)	
총 계		997,076.2	100.0	감) 5,714.7	991,361.5	100.0	
주거지역	소 계	880,791.4	88.3	증) 11,427.1	892,218.5	90.0	
	제2종일반주거지역	842,222.0	84.5	증) 49,996.5	892,218.5	90.0	
	준주거지역	38,569.4	3.8	감) 38,569.4	-	-	
일반상업지역		116,284.8	11.7	감) 17,141.8	99,143.0	10.0	

주) 미추4,5,6,7존치관리구역의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구분	기 정		변경	변경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방화지구	116,284.8	11.7	감) 17,141.8	99,143.0	10.0
시가지경관지구	12,172.87	1.2	감) 11,676.57	496.3	0.1

주)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상업지역 내 지정되어 있던 방화지구 및 시가지 경관지구 해제
주) 시가지 경관지구 중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정되어 있는 시가지 경관지구는 지정목적 및 실현성을 고려 폐지(476.9㎡)
주) 2022.06 고시 중 시가지경관지구 미감소분 반영(미추B구역, 미추E구역 : 6,810.07㎡)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역명		위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최고 높이	주용도	사업방식
					기준	상한			
도시개발1구역		주안동454-4 일원	26,168.0	70	800	800	45층	판매,업무, 의료,주거	도시개발
미추1구역	기정	주안동590-22 일원	64,671.7	20	228	267	40층	공동주택 부대시설	재개발
미추4구역	기정	주안동259-16 일원	-	-	-	-	-	공동주택 부대시설	재개발
	변경		68,384.3	20	214.4	288.9	40층		
미추5구역	기정	주안동594-4 일원	-	-	-	-	-	공동주택 부대시설	재개발
	변경		143,452.5	20	228.9	287.5	40층		
미추6구역	기정	주안동549-16 일원	-	-	-	-	-	공동주택 부대시설	재개발
	변경		95,085.3	20	210	285.8	40층		
미추7구역	기정	주안동450-11 일원	-	-	-	-	-	공동주택 부대시설	재개발
	변경		105,974.4	25	210	287.5	40층		
미추8구역	기정	주안동1536-17 일원	118,244.7	20	216.0	300.0	40층	공동주택 부대시설	재개발
주안1구역	기정	주안동1425-2 일원	129,593.4	20	214.0	258.59	40층	공동주택 부대시설	재개발
미추C구역	기정	주안동468-2 일원	23,230.0	60	455	804	107m	주거,업무, 판매	재개발
주안11구역	기정	주안동431-1 일원	21,709.0	60	542	818	105m	주거,업무, 판매	재개발

주) 건축물 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외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사업 유형	구역명		구역면적 ①	계획 기반시설 ②=③+④	신설 기반시설 ③	존치 기반시설 ④	폐지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⑤	기반시설 외 국공유지 ⑥	사업시행자 부담면적 ③-⑤-⑥	순부담률 (③-⑤-⑥)÷(①-④)×100
재개발	미추1구역		64,671.7	14,076.6	10,800.6	3,276	7,849	418	2,533.6	4.1
	미추4 구역	기정	-	-	-	-	-	-	-	-
		변경	68,384.3	22,041.3	15,586.4	6,454.9	6,765.5	1,483.2	7,337.7	11.8
	미추5 구역	기정	-	-	-	-	-	-	-	-
		변경	143,452.5	40,408.6	29,655.4	10,753.2	19,367.1	1,215.1	9,072.6	6.8
	미추6 구역	기정	-	-	-	-	-	-	-	-
		변경	95,085.3	29,988.7	20,294.1	9,694.6	9,599.6	503.0	10,191.5	11.9
	미추7 구역	기정	-	-	-	-	-	-	-	-
		변경	105,974.4	34,127.6	20,675.6	13,452.0	9,021.1	888.5	10,766.0	11.6
	미추 8구역		118,244.7	25,349.5	21,048.5	4,301.0	16,841.0	714.0	3,493.5	3.1
	주안1구역		129,593.4	32,292.7	30,434.7	1,858	19,099	862	10,473.7	8.2
	미추C구역		23,230.0	11,260.0	5,795.0	5,465.0	1,169.0	447.0	4,179	23.5
	주안11구역		21,709.0	6,456.0	4,012.0	2,444.0	864.0	-	3,148	16.3
도시개발	1구역		26,168.0	5,739.0	3,178.0	2,561.0	16,506.0	92.0	-	-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 미추4,5,6,7구역 촉진구역 지정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구역명		현황자료		계획세대수					임대 주택 공급 비율	세입세대 대비임대 주택확보 비율
		거주 세대	세입 세대	총계	분양	임대				
						소계	40㎡ 이하	60㎡ 이하		
촉진구역총계		10,832	4,703	17,421	16,817	604	445	159	1.9%	12.84%
도시개발	1구역	36	28	864	864	-	-	-	-	-
재개발	소계	10,796	4,675	16,557	15,953	604	445	159	-	12.92%
	미추1구역	896	480	1,321	1,291	30	26	4	2.3	6.25%
	미추4구역	914	681	1,468	1,394	74	42	32	5.0	10.87%
	미추5구역	1,655	858	2,960	2,804	156	156	-	5.3	18.18%
	미추6구역	1,344	766	1,877	1,782	95	95	-	5.1	12.40%
	미추76구역	1,333	873	2,070	1,966	104	48	56	5.0	11.91%
	미추8구역	1,395	799	2,825	2,773	52	39	13	1.8	6.51%
	주안1구역	2,958	-	2,958	2,892	66	30	36	2.2	-
	미추C구역	122	92	359	350	9	3	6	2.5	9.78%
	주안11구역	179	126	719	701	18	6	12	2.5	14.29%

12)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15	2017이후	2020	미추3-1구역, 미추5-1구역	총 3개 구역
			2024	도시개발1구역	
2단계	2018	2020이후	2023	주안1구역	총 1개 구역
3단계	2021	2023이후	2025	미추1, 8구역, 미추5-3구역 미추5-2구역(일부)	총 4개 구역
4단계	2023	2025이후	2035	미추4, 5, 6, 7, 2-1, 2-2, 2-3, 2-4 2-5, 4-1, 4-2, 4-4, 5-2(일부), 6-1 7-1, 7-4, 7-5, A-1, C구역 및 주안11구역	총 20개 구역

13)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변경) : 공람장소 비치도서로 갈음

14) 특성화 계획(변경) : 공람장소 비치도서로 갈음

15) 기타 계획(변경) : 공람장소 비치도서로 갈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미추1구역(변경없음)

2. 미추4구역(신설)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미추4구역 재개발사업	주안4동 259-16번지 일원	-	증) 68,384.3	68,384.3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	증) 68,384.3	68,384.3	100.0	
주거용지		-	증) 53,421.0	53,421.0	78.0	
기반시설 용지	소 계	-	증) 14,963.3	14,963.3	22.0	
	도 로	-	증) 12,452.3	12,452.3	18.3	
	녹 지	-	증) 2,511.0	2,511.0	3.7	

나) 용도지역계획

용 도 지 역		기 정		증 감	변 경(안)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68,384.3	100.0	-	68,384.3	100.0	
주거 지역	소 계	67,294.4	100.0	증) 1,089.9	68,384.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58,818.4	86.0	증) 9,565.9	68,384.3	100.0	
	준주거지역	8,476.0	12.4	감) 8,476.0	-	-	
일반상업지역		1,089.9	1.6	감) 1,089.9	-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도 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2	35	주간선도로	4,500 (-)	대2-35	대2-7 (관교동)	일반 도로	인고95-13호 (1995.01.27.)	
변경	대로	1	12	35~40	주간선도로	4,500 (90)	대2-35	대2-7 (관교동)	일반 도로	인고95-13호 (1995.01.27.)	
기정	대로	3	173	25	보조 간선도로	827 (-)	광3-44	대1-12	일반 도로	인고10-139호 (2010.05.24.)	
변경	대로	3	173	25~30	보조 간선도로	814 (46)	광3-44	대1-12	일반 도로	인고10-139호 (2010.05.24.)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	22	집산도로	340 (268)	대1-1	대3-173	일반 도로	인고10-139호 (2010.05.24.)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424 (424)	대1-12	중1-4	일반 도로	인고10-139호 (2010.05.24.)	
변경	중로	2	6	15	집산도로	433 (433)	대1-12	중1-4	일반 도로	인고10-139호 (2010.05.24.)	
기정	소로	3	34	6	국지도로	458 (229)	소3-32	중2-6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변경	소로	3	34	6	국지도로	207 (-)	소3-32	중1-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지구외
기정	소로	3	35	6	국지도로	322 (210)	소2-4	중2-6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변경	소로	3	35	6	국지도로	90 (-)	소2-4	중1-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지구외
기정	소로	3	37	6	국지도로	335 (198)	소2-4	소3-40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변경	소로	3	37	6	국지도로	115 (-)	소2-4	중1-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지구외
기정	소로	3	38	6	국지도로	237 (160)	대1-1	중1-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변경	소로	3	38	6	국지도로	62 (-)	대1-1	중2-6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지구외
기정	소로	3	39	6	국지도로	319 (234)	대1-1	대3-17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변경	소로	3	39	6	국지도로	70 (-)	대1-1	중2-6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지구외
폐지	소로	3	40	6	국지도로	101 (101)	중2-6	대3-173	일반 도로	인고22-163 (2022.06.13.)	

주)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대로1-12	대로1-12	• 일부구간 폭원 변경 - B : 35m → 35~40m	•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확대
대로3-173	대로3-173	• 도로 연장 및 폭원 변경 - L : 827m → 814m - B : 25m → 25~30m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연장 변경 및 완화 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 구간 폭원 확대
중로2-6	중로2-6	•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 L : 424m → 433m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소로3-34	소로3-34	• 도로 연장 및 종점 변경 - L : 458m → 207m - 종점 : 중2-6 → 중1-4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3-35	소로3-35	• 도로 연장 및 종점 변경 - L : 322m → 90m - 종점 : 중2-6 → 중1-4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3-37	소로3-37	• 도로 연장 및 종점 변경 - L : 335m → 115m - 종점 : 소3-40 → 중1-4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3-38	소로3-38	• 도로 연장 및 종점 변경 - L : 237m → 62m - 종점 : 중1-4 → 중2-6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3-39	소로3-39	• 도로 연장 및 종점 변경 - L : 319m → 70m - 종점 : 대3-173 → 중2-6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3-40	소로3-40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녹지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주안4동 303-11번지 일원	-	증) 2,511.0	2,511.0	-	

▌녹지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2	완충녹지	• 신설 (면적: 2,511.0㎡)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 신설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재개발사업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계(동)	존 치	개 수	철 거	철거·이주	비 고
329	-	-	329	-	

▌용적률산정에 관한 계획

구 분	산정내용							
토지 이용 계획	구역면적 (㎡) ①	계획 기반 시설(㎡) ②=③+④	신설 기반 시설(㎡) ③	존치 기반 시설(㎡) ④	폐지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⑤	기반시설 외 국공유지 (㎡) ⑥	사업시행자 부담 면적(㎡) ⑦=③-⑤-⑥	순부담율 (%) ⑦÷(①-④) ×100
	68,384.3	22,041.3	15,586.4	6,454.9	6,765.5	1,483.2	7,337.7	11.8
기준 용적률	○ 기준용적률: 214.7% (용도지역 혼재 평균기준용적률) = [(A용도지역 면적×기준용적률) + (B용도지역 면적×기준용적률)] ÷ 대상지 면적 = [(제2종일반주거(58,818.4)×210) + (준주거(8,476.0)×230) + (일반상업(1,089.9)×350)] ÷ 68,384.3 = 214.7%							
허용 용적률	○ 용적률 완화 : 30% = 기준용적률(214.7%) + 녹색, 제로에너지(20%) + 지역업체(10%) = 244.7%							
인센 티브 용적률	○ 인센티브 용적률 : 44.2% = [1.5×(공공시설제공부지(사업시행자부담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부지)×기준용적률] = [1.5×(7,337.7÷53,421.0)×214.7] = 44.2%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288.9%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인센티브용적률 = 214.7% + 30% + 44.2% = 288.9%							

주) 계획기반시설 면적중 구역 외 기반시설(미추4-1구역)면적 7,078㎡ 포함(미추홀구 선시행 후 회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주용도	건폐율(%)	상한용적률	층 수
공동주택 용지	신설	53,421.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88.9%이하	40층이하

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센티브용적률(「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친환경·저에너지 녹색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용적률 완화(인센티브) 항목 반영 시)을 적용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사업계획반영 여부 및 이행 수준에 따라 상한용적률에 포함된 인센티브용적률이 삭감 될 수 있음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재정비촉진계획의 18 기타계획의 폐기물처리 및 방재계획 등으로 갈음

사) 촉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갈음

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및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재정비촉진계획의 10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계획으로 갈음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1,468세대 중 74세대 임대주택 공급

- 재정비촉진계획의 3 인구 및 주택 수용 계획으로 갈음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
-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각 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 가능(다만,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 수량을 최소화)
- 재정비촉진계획의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 계획으로 갈음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

○ 재개발조합 자체시행

3. 미추5구역(신설)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미추5구역 재개발사업	주안2동 594-4번지 일원	-	증) 143,452.5	143,452.5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	증)143,452.5	143,452.5	100.0	
주거용지		-	증)108,586.7	108,586.7	75.7	
기반시설 용지	소 계	-	증)34,312.3	34,312.3	23.9	
	공 원	-	증)12,067.0	12,067.0	8.4	
	녹 지	-	증)991.4	991.4	0.7	
	공공청사	-	증)1,589.4	1,589.4	1.1	
	중학교	-	증)11,509.7	11,509.7	8.0	
	도 로	-	증)8,154.8	8,154.8	5.7	
기타용지	소 계	-	증)553.5	553.5	0.4	
	종교용지	-	증)553.5	553.5	0.4	

나) 용도지역계획

용 도 지 역		기 정		증 감	변 경(안)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143,452.5	100.0	-	143,452.5	100.0	
주거지역	소 계	128,294.3	89.5	증)15,158.2	143,452.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98,795.8	68.9	증)44,657.7	143,452.5	100.0	
	준주거지역	29,499.5	20.6	감)29,499.5	-	-	
일반상업지역		15,158.2	10.6	감)15,158.2	-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	22	집산 도로	409	광3-7	대3-17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변경	중로	1	2	22~28	집산 도로	409 (190)	광3-7	대3-17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565	중1-2	광3-4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95	중1-2	어린이 공원8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폐지	소로	3	36	6~10	국지 도로	383	대2-14	중1-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160	대2-14	대2-14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25	8~10	국지 도로	209	광3-7	소3-25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폐지	소로	2	32	8	국지 도로	424	대2-14	중1-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폐지	소로	2	417	9	국지 도로	206	광3-7	소3-25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폐지	소로	2	가	8	국지 도로	156	대2-14	소3-2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84	대3-172	소3-25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폐지	소로	3	20	6	국지 도로	123	소3-25	소2-가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폐지	소로	3	21	6	국지 도로	190	대3-172	소3-25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폐지	소로	3	25	6~7	국지 도로	322	대2-14	중1-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폐지	소로	3	가	6	국지 도로	245	광3-7	소3-25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주) 촉진지구에 저촉되는 지구 외 도로(광로3-7호선, 대로2-14호선 등)는 완화차로 변경사항임
주)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호선	중로1-2호선	• 도로 폭원 변경 - B : 22m ⇒ 22-28m	•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도로 폭원 확대
소로2-2호선	소로2-2호선	• 도로 연장 및 기점 변경 - 기점: 광3-44 ⇒ 어린이공원8 - L : 565m ⇒ 95m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 도로 기점부 오기정정
소로3-36호선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25호선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32호선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417호선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가호선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10호선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20호선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21호선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25호선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가호선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	소로1-A	• 신설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 공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2	주안 공원	어린이 공원	주안2동 596-19 일원	6,899.0	증) 5,168.0	12,067.0	인고22-163 (22.06.13)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주안 공원	주안2동 596-19일원	· 면적 변경 (A=6,899㎡→12,067㎡)	•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면적 조정

▌ 녹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1	녹 지	경관녹지	주안2동 592-15 일원	986.0	증) 5.4	991.4	인고10-139 (10.5.24)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주안2동 592-15 일원	· 면적 변경 (A=986.0㎡→991.4㎡)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조정

▌ 학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1	학 교	중학교	주안2동 594-24 일원	11,556	감)46.3	11,509.7	인고10-139 (10.05.24.)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학 교	주안2동 594-24 일원	• 면적 변경 - A=11,556.0㎡→11,509.7㎡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부지 조정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공청사	행정복지센터	주안2동 561-11번지 일원	-	증) 1,589.4	1,589.4	

▌기타 공공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청사	• 신설(1,589.4㎡)	• 미추5구역 재개발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이전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재개발사업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계(동)	존 치	개 수	철 거	철거·이주	비 고
549	-	-	549	-	

▌용적률산정에 관한 계획

구 분	산정내용							
토지 이용 계획	구역면적 (㎡) ①	계획 기반 시설(㎡) ②=③+④	신설 기반 시설(㎡) ③	존치 기반 시설(㎡) ④	폐지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⑤	기반시설 외 국공유지 (㎡) ⑥	사업시행자 부담 면적(㎡) ⑦=③-⑤-⑥	순부담율 (%) ⑦÷(①-④) ×100
	143,452.5	40,408.6	29,655.4	10,753.2	19,367.7	1,215.1	9,072.6	6.8
기준 용적률	○ 기준용적률: 228.9% (용도지역 혼재 평균기준용적률) = [(A용도지역 면적×기준용적률) + (B용도지역 면적×기준용적률)] ÷ 대상지 면적 = [(제2종일반주거(98,795.8)×210) + (준주거(29,499.5)×230) + (일반상업(15,158.2)×350)] ÷ 143,452.5㎡ = 228.9%							
허용 용적률	○ 용적률 완화 : 30% = 기준용적률(228.9%) + 녹색, 제로에너지(20%) + 지역업체(10%) = 258.9%							
인센 티브 용적률	○ 인센티브 용적률 : 28.6% = [1.5×(공공시설제공부지(사업시행자부담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부지)×기준용적률] = [1.5×(9,072.6÷108,586.7)×228.9] = 28.6%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287.5%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인센티브용적률 = 228.9% + 30% + 28.6% = 287.5%							

주) 계획기반시설 면적 중 구역 외 기반시설(미추5-2구역 1,303㎡, 미추5-3구역 일부 4,793.3㎡)면적 6,096.3㎡ 포함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주용도	건폐율(%)	상한용적률	층 수
공동주택용지	108,586.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87.5%이하	40층이하
학교	11,509.7	중학교	6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공공청사	1,589.4	행정복지센터	6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종교시설	553.5	종교시설	6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센티브용적률(「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친환경·저에너지 녹색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용적률 완화(인센티브) 항목 반영 시)을 적용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사업계획반영 여부 및 이행 수준에 따라 상한용적률에 포함된 인센티브용적률이 삭감 될 수 있음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재정비촉진계획의 18 기타계획의 폐기물처리 및 방재계획 등으로 갈음

사) 촉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학교 2개소에 대해 도로변 가로수 식재

○ 학교와 인접한 가로변 건축에 대한 중저층 배치계획

○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갈음

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및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재정비촉진계획의 10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계획으로 갈음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2,960세대 중 156세대 임대주택 공급

- 재정비촉진계획의 3 인구 및 주택 수용 계획으로 갈음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

-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각 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 가능(다만,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 수량을 최소화)

- 재정비촉진계획의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으로 갈음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

○ 재개발조합 자체시행

4. 미추6구역(신설)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미추6구역 재개발사업	주안2동 549-16	-	95,085.3	95,085.3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	증) 95,085.3	95,085.3	100.0	
주거용지		-	증) 69.943.7	69,943.7	73.6	
기반시설 용지	소 계	-	증) 25,141.6	25,141.6	26.4	
	공원	-	증) 7,435.9	7,435.9	7.8	
	학교	-	증) 3,600.0	3,600.0	3.8	유치원
	도로	-	증) 14,105.7	14,105.7	14.8	

나) 용도지역계획

용 도 지 역		기 정		증 감	변 경(안)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95,085.3	100.0	-	95,085.3	100.0	
주거 지역	소 계	95,085.3	100.0	-	95,085.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95,085.3	100.0	-	95,085.3	100.0	
	준주거지역	-	-	-	-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도 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44	40	주간선 도로	746 (215)	주안동 대1-1	선학동 광3-7	일반 도로	인고95-13 (95.01.27)	미추홀대로
기정	대로	3	172	25	보조 간선 도로	817 (470)	광3-44	대2-14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변경	대로	3	172	25~30	보조 간선 도로	814 (470)	광3-44	대2-14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일부구간 선형 및 폭원 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44	40	주간선 도로	746 (215)	주안동 대1-1	선학동 광3-7	일반 도로	인고95-13 (95.01.27)	미추홀대로
기정	대로	3	172	25	보조 간선 도로	817 (470)	광3-44	대2-14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변경	대로	3	172	25~30	보조 간선 도로	814 (470)	광3-44	대2-14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일부구간 선형 및 폭원 변경
기정	중로	2	4	18	집산 도로	573 (465)	광3-44	중1-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523 (459)	중2-4	대1-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구역외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308	대3-172	대1-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565	중1-2	광3-4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5구역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95	중1-2	어린이 공원8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90 (190)	중2-4	대3-17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도로폭원 및 시종점 변경
변경	소로	3	6	8	국지 도로	131 (131)	중2-4	소2-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326 (190)	중2-3	중2-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구역외
변경	소로	3	9	6	국지 도로	120	중2-3	대3-17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폐지	소로	3	18	6	국지 도로	104	소3-6	소2-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폐지	소로	3	19	6	국지 도로	231	소3-23	소3-9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379 (190)	중2-4	소3-1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구역외
변경	소로	3	23	6	국지 도로	164	대3-172	소3-1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기정	소로	3	396	6	국지 도로	434 (190)	중2-3	중2-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구역외
변경	소로	3	396	6	국지 도로	219	중2-3	대3-17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주)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72호선	대로3-172호선	• 도로 연장 및 폭원변경 - L: 817m ⇒ 814m - B: 25 ⇒ 25~30m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선형 연장 변경 및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확대
소로2-1호선	소로2-1호선	• 도로 연장 및 기점 변경 - L: 523m ⇒ 308m - 기점: 중로 2-4 ⇒ 대3-172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기점부 위치 변경(구역외)
소로2-2호선	소로2-2호선	• 도로 연장, 종점 변경 및 기점 오기 정정 - L: 863m ⇒ 95m - 기점: 광로3-44 ⇒ 어린이공원8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 도로 기점부 오기 정정(구역외)
소로3-6호선	소로3-6호선	• 도로 연장, 종점 및 폭원 변경 - L: 190m ⇒ 131m - 종점: 대3-172 ⇒ 소2-2 - B: 6m ⇒ 8m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보도설치를 위한 폭원 확장
소로3-9호선	소로3-9호선	• 도로 연장 및 종점 변경 - L: 326m ⇒ 120m - 종점: 중로2-4 ⇒ 대3-172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변경(구역외)
소로3-18호선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19호선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23호선	소로3-23호선	• 도로 연장 및 기점 변경 - L: 379m ⇒ 164m - 기점: 중로2-4 ⇒ 대3-172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연장 축소 및 기점부 위치변경(구역외)
소로3-396호선	소로3-396호선	• 도로 연장 및 종점 변경 - L: 434m ⇒ 219m - 종점: 중로2-4 ⇒ 대3-172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구역외)

▌공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8	공 원	어린이 공원	주안2동 557-52 일원	7,667	감) 231.1	7,435.9	인고22-163 (22.06.13)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8	공 원	주안2동 557-52 일원	• 면적변경 (A = 7,667㎡→7,435.9㎡)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면적 조정

▌ 학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	학 교	유치원	주안2동 558-59 일원	-	증) 3,600	3,600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	주안2동 558-59 일원	• 신설 (A=3,600㎡)	•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유치원 신설

▌ 시 장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1	시 장	소매 시장	주안2동 549-1	3,541.8	감) 3,541.8	-	인고22-163 (22.06.13)	

▌ 시장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시 장	• 시장 폐지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시장 폐지

▌ 기타 공공시설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문화시설	문화시설	주안2동558-59 일원	4,000	감)4,000	-	인고22-163 (22.06.13)

▌ 기타 공공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화시설	• 폐지	• 입지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재개발사업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계(동)	존 치	개 수	철 거	철거·이주	비 고
376	-	-	376	-	

▌용적률산정에 관한 계획

구 분	산정내용							
토지 이용 계획	구역면적(㎡) ①	계획 기반 시설(㎡) ②=③+④	신설 기반 시설(㎡) ③	존치 기반 시설(㎡) ④	폐지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⑤	기반시설 외 국공유지(㎡) ⑥	사업시행자 부담 면적(㎡) ⑦=③-⑤-⑥	순부담율(%) ⑦÷(①-④)×100
	95,085.3	29,988.7	20,294.1	9,694.6	9,599.6	503.0	10,191.5	11.9
기준 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0%							
허용 용적률	○ 용적률 완화 : 30% = 기준용적률(210.%) + 녹색, 제로에너지(20%) + 지역업체(10%) = 240.0%							
인센 티브 용적률	○ 인센티브 용적률 : 45.8% = [1.5×(공공시설제공부지(사업시행자부담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부지)×기준용적률] = [1.5×(10.191.5÷69.943.7)×210.0] = 45.8%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285.8%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인센티브용적률 = 210.0% + 30% + 45.8% = 285.8%							

주) 계획기반시설 면적 중 구역 외 기반시설(미추2-5구역 일부)면적 4,847.1㎡ 포함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주용도	건폐율(%)	상한용적률	층 수
공동주택용지	69,943.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85.8%이하	40층이하

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센티브용적률(「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친환경·저에너지 녹색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용적률 완화(인센티브) 항목 반영 시)을 적용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사업계획반영 여부 및 이행 수준에 따라 상한용적률에 포함된 인센티브용적률이 삭감 될 수 있음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재정비촉진계획의 18 기타계획의 폐기물처리 및 방재계획 등으로 갈음

사) 촉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미추5구역 내 학교 1개소 인접하여 공원 계획

○ 학교와 인접하여 통경축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일조권 등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갈음

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및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재정비촉진계획의 ⑩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계획으로 갈음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1,877세대 중 95세대 임대주택 공급

- 재정비촉진계획의 ③ 인구 및 주택 수용 계획으로 갈음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

-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각 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 가능(다만,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 수량을 최소화)

- 재정비촉진계획의 ⑤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으로 갈음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

○ 재개발조합 자체시행

5. 미추7구역(신설)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미추7구역 재개발사업	주안4동 450-11번지 일원	-	증) 105,974.4	105,974.4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	증)105,974.4	105,974.4	100.0	
주거용지		-	증)71,259.4	71,259.4	67.2	
기반시설 용지	소 계	-	증)34,127.6	34,127.6	32.2	
	도로	-	증)25,100.6	25,100.6	23.7	
	공원1	-	증)5,900.0	5,900.0	5.6	
	공원2	-	증)3,127.0	3,127.0	3.0	
기타 용지	소 계	-	증)587.4	587.4	0.5	
	근린생활시설용지1	-	증)343.3	343.3	0.3	
	근린생활시설용지2	-	증)244.1	244.1	0.2	

나) 용도지역계획

용 도 지 역		기 정		증 감	변 경(안)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105,974.4	100.0	-	105,974.4	100.0	
주거지역	소 계	105,974.4	100.0	-	105,974.4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974.4	100.0	-	105,974.4	100.0	
	준주거지역	-	-	-	-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44	32~45	주간선 도로	746 (198)	주안동 대1-1	선학동 광3-7	일반 도로	인고95-13 (95.01.27)	미추홀 대로
기정	대로	3	173	25	보조 간선 도로	827 (545)	광3-44	대1-1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일부구간 선형 및 연장 변경
변경	대로	3	173	25~30	보조 간선 도로	814 (545)	광3-44	대1-1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기정	중로	1	5	16~22	집산 도로	398 (185)	광3-7	대3-173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417 (417)	광3-44	대3-17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402 (148)	중2-5	소3-4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254 (-)	중2-5	대3-17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40 (-)	광3-7	소3-41	일반 도로	인고15-255 (15.09.30)	연장 오기 정정
변경	소로	2	16	8	국지 도로	260 (57)	광3-7	소3-41	일반 도로	인고15-255 (15.09.30)	
폐지	소로	3	29	6	국지 도로	477 (477)	소3-30	중1-5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기정	소로	3	30	6	국지 도로	320 (195)	소3-41	중1-660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변경	소로	3	30	6	국지 도로	125 (-)	대3-173	중1-660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414 (180)	중1-660	소3-4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변경	소로	3	31	6	국지 도로	234 (-)	중1-660	대3-17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기정	소로	3	32	6	국지 도로	410 (168)	중2-5	소3-4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변경	소로	3	32	6	국지 도로	242 (-)	중2-5	대3-17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기정	소로	3	41	6	국지 도로	537 (537)	광3-44	중1-5	일반 도로	인고15-255 (15.09.30)	
변경	소로	3	41	6~12	국지 도로	537 (537)	광3-44	중1-5	일반 도로	인고15-255 (15.09.30)	
기정	소로	3	다	6	국지 도로	56 (6)	소3-41	소2-17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변경	소로	3	다	6	국지 도로	56 (-)	소3-41	소2-17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주)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73	대로3-173	• 도로 연장 및 선형 변경 - L : 827m → 814m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연장 변경
소로2-3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16	소로2-16	• 도로 연장 오기 정정 - L : 40m → 260m	• 도로 연장 오기 정정
소로3-29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4	소로2-4	• 도로 연장 및 종점 변경 - L = 402m → 254m - 종점 : 소3-41 → 대3-173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3-30	소로3-30	• 도로 연장 및 기점 변경 - L = 320m → 105m - 기점 : 소3-41 → 대3-173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기점부 위치 변경
소로3-31	소로3-31	• 도로 연장 및 종점 변경 - L = 414m → 225m - 종점 : 소3-41 → 대3-173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3-32	소로3-32	• 도로 연장 및 종점 변경 - L = 410m → 242m - 종점 : 소3-41 → 대3-173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3-41	소로3-41	• 도로 폭원 변경 - B = 6m → 6~12m	•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확대

▌주차장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7	주차장	주안4동 417-19 일원	329	감) 329	-	인고22-163 (22.06.13)	
폐 지	10	주차장	주안4동 415-24 일원	117	감) 117	-	인고22-163 (22.06.13)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주차장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폐지
10	주차장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7	미추 공원	어린이 공원	주안4동 453-51	3,149	감) 3,149	-	인고15-255 (15.09.30)	
변경	10	-	어린이 공원	주안동 384-26 일원	5,628	증) 272	5,900	인고22-163 (22.06.13)	
신설	3	-	어린이 공원	주안동 1511-45 일원	-	증) 3,127	3,127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어린이공원	• 폐지	• 공원시설 재배치에 따른 공원 폐지
10	어린이공원	• 면적 변경 A = 5,628㎡ → 5,900㎡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조정
3	어린이공원	• 신설 (3,127㎡)	• 주변으로 다수의 공원과 연계하는 거점형 공원 조성 위한 공원 신설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재개발사업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계(동)	존 치	개 수	철 거	철거·이주	비 고
496	-	-	496	-	

▌용적률산정에 관한 계획

구 분	산정내용							
토지 이용 계획	구역면적(㎡) ①	계획 기반 시설(㎡) ②=③+④	신설 기반 시설(㎡) ③	존치 기반 시설(㎡) ④	폐지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⑤	기반시설 외 국공유지(㎡) ⑥	사업시행자 부담 면적(㎡) ⑦=③-⑤-⑥	순부담율(%) ⑦÷(①-④)×100
	105,974.4	34,127.6	20,675.6	13,452.0	9,021.1	888.5	10,766.0	11.6
기준 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0%							
허용 용적률	○ 용적률 완화 : 30% = 기준용적률(210.%) + 녹색, 제로에너지(20%) + 지역업체(10%) = 240.0%							
인센 티브 용적률	○ 인센티브 용적률 : 47.5% = [1.5×(공공시설제공부지(사업시행자부담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부지)×기준용적률] = [1.5×(10,766.0÷71,259.4)×210.0] = 47.5%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287.5%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인센티브용적률 = 210.0% + 30% + 47.5% = 287.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주용도	건폐율(%)	상한용적률	층 수
공동주택용지	71,259.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87.5%이하	40층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1	343.3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
근린생활시설용지2	244.1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

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센티브용적률(「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친환경·저에너지 녹색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용적률 완화(인센티브) 항목 반영 시)을 적용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사업계획반영 여부 및 이행 수준에 따라 상한용적률에 포함된 인센티브용적률이 삭감될 수 있음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재정비촉진계획의 ⑱ 기타계획의 폐기물처리 및 방재계획 등으로 갈음

사) 촉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갈음

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및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재정비촉진계획의 ⑩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계획으로 갈음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2,070세대 중 104세대 임대주택 공급

- 재정비촉진계획의 ③ 인구 및 주택 수용 계획으로 갈음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

-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각 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 가능(다만,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 수량을 최소화)

- 재정비촉진계획의 ⑤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으로 갈음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

○ 재개발조합 자체시행

6. 미추8구역(변경없음)

7. 주안1구역(변경없음)

8. 미추C구역(변경없음)

9. 주안11구역(변경없음)

10. 도시개발1구역(변경없음)

11. 미추A-1구역(변경없음)

12. 미추2-1구역(변경없음)

13. 미추2-2구역(변경없음)

14. 미추2-3구역(변경없음)

15. 미추2-4구역(변경없음)

16. 미추2-5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사업의 명칭 및 구역면적

구 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미추2-5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주안동 543-26 일원	12,011.0	감) 7,494.0	4,517.0	

주) 대로3-172호선 선형변경에 따라 미추2존치관리구역 및 미추6구역으로 일부편입

(2) 도시계획시설계획

가) 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73	25	보조간선 도로	817 (470)	광3-44	대1-1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변경	대로	3	173	25~30	집산 도로	814 (470)	광3-44	대1-1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주) ( )는 구역내 연장 임

나)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72	대로3-172	• 도로 연장 및 선형 변경 - L : 827m → 814m - B : 20m → 25~30m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폭원변경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설명

가)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나) 성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7. 미추3-1구역(변경없음)

18. 미추4-1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사업의 명칭 및 구역면적

구 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미추4-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주안동 404-19 일원	7,153	감) 75	7,078	

주) 미추7구역 촉진구역지정에 따라 교차로 구간 일부 미추7구역으로 편입

(2) 도시계획시설계획

가) 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73	25	보조간선 도로	827 (277)	광3-44	대1-1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변경	대로	3	173	25~30	집산 도로	814 (269)	중1-5	대1-1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주) ( )는 구역내 연장 임

나)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73	대로3-173	• 기점부 위치, 도로 연장 및 선형 변경 - L : 827m → 814m - B : 20m → 25~30m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연장 변경 및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폭원변경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설명

가)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나) 성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9. 미추4-2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사업의 명칭 및 구역면적

구 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미추4-2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주안4동 391-42 일원	5,873	감) 4,301	1,572	

주) 최소도로폭원 확보(B=12m)를 위하여 일부구간 미추4구역에 편입

(2) 도시계획시설계획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	22	집산 도로	340 (277)	대1-1	대3-173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주) ( )는 구역내 연장 임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설명

가)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나) 성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20. 미추4-3구역(폐지)

○ 미추4구역에 포함되어 폐지

21. 미추4-4구역(변경없음)

22. 미추5-1구역(변경없음)

23. 미추5-2구역(변경없음)

24. 미추5-3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사업의 명칭 및 구역면적

구 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미추5-3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주안동 1417-115 일원	9,188.0	감) 4,393.5	4,793.5	

주) 미추5구역 촉진구역지정에 따라 일부 미추5구역으로 편입

(2) 도시계획시설계획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	22 (22)	집산 도로	409 (409)	광3-7	대3-17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변경	중로	1	2	22~28 (22)	집산 도로	409 (219)	광3-7	대3-17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주) ( )는 구역내 연장 임

나)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호선	중로1-2호선	• 구역내 연장 변경 - L : 409m → 219m	• 미추5,구역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일부 도로구간 편입에 따른 구역내 연장 및 면적변경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설명

가)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나) 성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25. 미추5-4, 5-5, 5-6구역(폐지)

○ 미추5구역에 포함되어 폐지

26. 미추6-1구역(변경없음)

27. 미추 6-2, 6-3구역(폐지)

○ 미추6구역에 포함되어 폐지

28. 미추7-1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사업의 명칭 및 구역면적

구 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미추7-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주안4동 1509-11 일원	3,650	감) 11.7	3,638.3	

주) 미추7구역 촉진구역 지정에 따라 도로구간 일부 미추7구역 편입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다	6	국지도로	56	소3-41	소2-17	일반 도로	인고2022-163 (22.06.13)	

나) 공원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송내 공원	어린이 공원	주안4동 1511-7일원	3,286	-	3,286	인고10-139 (10.05.24)	저류시설: 3,638.3㎡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설명

가)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나) 성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29. 미추7-2, 7-3구역(폐지)

○ 미추7구역에 포함되어 폐지

30. 미추7-4구역(변경없음)

(1) 재정비촉진사업의 명칭 및 구역면적

구 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미추7-4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주안동 467-2 일원	14,800.7	감) 8,116.9	6,683.8	

주) 미추6,7구역 촉진구역 지정에 따라 도로구간 일부 미추6,7구역 편입

(2) 도시계획시설계획

가) 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44	32~45	주간선 도로	746 (347)	대1-1	광3-7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미추홀 대로
기정	광로	3	44	32~45	주간선 도로	746 (150)	대1-1	광3-7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연장 변경

주) ( )는 구역내 연장 임

나)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44	광로3-44	• 구역내 연장 변경 - L : 347m → 150m	• 미추6,7구역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일부 도로구간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설명

가)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나) 성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31. 미추7-5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사업의 명칭 및 구역면적

구 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미추7-5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주안동 421-5 일원	13,808.0	감) 12,071.4	1736.6	

주) 미추7구역 촉진구역 지정에 따라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구간 일부 미추7구역 편입

(2) 도시계획시설계획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73	25	보조 간선 도로	827 (470)	광3-44	대2-14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변경	대로	3	173	25~30	보조 간선 도로	814 (470)	광3-44	대2-14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일부구간 선형 및 폭원 변경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나)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72	대로 3-173	• 연장 및 폭원변경 - L : 347m → 150m - B : 20m → 25~30m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선형 연장변경 및 폭원 변경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나) 성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7)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

1. 존치1관리구역(변경없음)

2. 존치2관리구역(변경없음)

3. 존치5관리구역(변경없음)

4. 존치6관리구역(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⑥	존치6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2동 698-3일원	-	증) 1,507	1,507	

(2) 지구단위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미추홀구 주안2동 698-3 일원	
면 적			1,507.0㎡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공공시설계획			-	
건축물의 용도 · 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A)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등 • 위락시설 - 공장(공해배출 업종) - 위험물 저장 및처리 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묘지 관련시설 • 공동주택(공동주택 비율 80%~90%미만 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기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범위 내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용도 · 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허용용도 (C)	• 불허용도 외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 내)	
	건폐율		70% 이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준용
	용적률		1,000% 이하	
	최고높이		60m 이하	
	최대개발규모		2,000㎡	
	배치		- 한나루로변, 건축한계선 2m -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1m	
건축물 형태			주변 촉진구역의 건축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건축심의를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심의 결과 반영	
기타 사항	전면공지		간선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사업방식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름	

5. 미추2 존치관리구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②	미추2존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2동 510-32 일원	89,065.0	증) 2,718.3	91,783.3	

주) 미추2-5구역 도로선형변경에 따라 구역변적 변경

(2) 지구단위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간선부(미추홀대로)	이면부	
위 치		미추홀구 주안2동 510-32 일원		
면 적	기 정	89,065.0㎡		
	변 경	91,783.3㎡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공공시설계획		-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간선부(미추홀대로)	이면부	
건축물의 용도 · 밀도에 관한계획	용 도	불허용도 (A)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운동시설 중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학교위생 정화구역내 관련규정 준수
		허용용도 (C)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 내)		
	건폐율		60%이하	60%이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준용
	용적률		250%이하	250%이하	
	최고높이		30m 이하	20m 이하	
	최대개발규모		2,000㎡	1,000㎡	
	배 치		미추홀대로변, 대로3-172호선변 건축한계선 2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중로1-1호선변, 중로2-3호선변, 대로3-172호선변 건축한계선 2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1m	
건축물 형태			주변 촉진구역의 건축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건축심의를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심의 결과 반영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간선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사업방식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름		

주) 향후 촉진사업을 위한 법적요건 충족 시(행정절차 포함) 촉진구역으로 전환가능
주) 최대개발규모 적용 시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존 대지는 제외

6. 미추4 존치관리구역(폐지)

7. 미추5 존치관리구역(폐지)

8. 미추5-1 존치관리구역(폐지)

9. 미추6 존치관리구역(폐지)

10. 미추7 존치관리구역(폐지)

11. 미추A 존치관리구역(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변경)

지구명	사업유형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미추홀구 주안2·4동 일원	997,076.2	감) 5,714.7	991,361.5	

※ 변경사유

구 분	명 칭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 경	주안 2·4동일원 재정비촉진지구	• 면적변경 (997,076.2㎡ → 991,361.5㎡)	•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도로선형 조정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997,076.2	감) 5,714.7	991,361.5	100.0	
주거지역	소 계	880,791.4	증) 11,427.1	892,218.5	90.0	
	제2종일반주거지역	842,222.0	증) 49,996.5	892,218.5	90.0	
	준주거지역	38,569.4	감) 38,569.4	-	-	
상업지역	소 계	116,284.8	감) 17,141.8	99,143.0	10.0	
	일반상업지역	116,284.8	감) 17,141.8	99,143.0	10.0	

※ 변경사유

용 도 지 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 17,141.8	• 미추4,5,6,7구역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촉진계획(안)수립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 38,569.4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1)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방화 지구	주안동	-	116,284.8	감) 17,141.8	99,143.0		

※ 변경사유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방화지구	면적 변경 (감 17,141.8㎡)	• 미추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지정되어 있던 방화지구 해제

(2) 시가지 경관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시가지 경관지구	주안동	-	12,172.87	감) 11,676.57	496.3		

※ 변경사유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방화지구	면적 변경 (감 11,676.57㎡)	• 미추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지정되어 있던 시가지경관지구 해제 및 면적산정 오기 정정 ※ 시가지 경관지구 중 미 감소분 : 6,810.07㎡ - 미추B구역: 3,475.07㎡, 미추E구역 : 3,335㎡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1	미추1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2동 590-22 일원	64,671.7	-	64,671.7	
변 경	2	미추2존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2동 510-32 일원	89,065.0	증)3,398.0	92,463.0	
변 경	4	미추4존치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추4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4동 259-16 일원	57,789.0	증)19,348.3	77,137.3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5	미추5존치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추5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2동 594-4 일원	118,751.0	증)30,797.5	149,548.5	
폐 지	5-1	미추5-1존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2동 561-2 일원	3,533.0	감)3,533.0	-	
변 경	6	미추6존치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추6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2동 549-16 일원	75,696.0	증)23,072.2	98,768.2	
변 경	7	미추7존치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추7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4동 450-11 일원	83,178.0	증)24,518.1	107,696.1	
기 정	8	미추8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4동 1536-17 일원	118,244.7	-	118,244.7	
기 정	9	주안1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2동 1425-2 일원	129,593.4	-	129,593.4	
기 정	10	미추A존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화1동 461-2 일원	16,904.0	-	16,904.0	
기 정	12	미추C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2동 468-2 일원	23,230.0	-	23,230.0	
기 정	13	주안11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4동 431-1 일원	21,709.0	-	21,709.0	
기 정	15	도시개발1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4동 454-4 일원	26,168.0	-	26,168.0	
기 정	16	존치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화동 453-1 일원	3,992.0	-	3,992.0	
기 정	17	존치2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동 409-1 일원	2,674.0	-	2,674.0	
기 정	22	존치5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2동 1613 일원	4,008.0	-	4,008.0	
신 설	23	존치6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안동 715-2	-	증)1,507.0	1,507.0	

※ 상기 면적은 CAD 상 구적 면적임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 도 로

▌도로 결정조서(변경)

연번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1	기정	광로	3	44	32~45	주간선 도로	746	대1-1	광3-7	일반 도로		인고95-13 (95.01.27)	미추홀대로
2	기정	대로	1	1	35~39	주간선 도로	12,140 (338)	광3-1	부천시계	일반 도로		인고95-13 (95.01.27)	경인로
3	기정	대로	1	12	35~40	주간선 도로	4,500 (-)	대2-35	대2-7 (관교동)	일반 도로		인고95-13 (95.01.27)	경원대로
	변경	대로	1	12	35~40	주간선 도로	4,500 (570)	대2-35	대2-7 (관교동)	일반 도로		인고95-13 (95.01.27)	
4	기정	대로	3	172	25	보조간선 도로	817	광3-44	대2-14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일부구간 선형 및 폭원 변경
	변경	대로	3	172	25~30	보조간선 도로	814	광3-44	대2-14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5	기정	대로	3	173	25	보조간선 도로	827	광3-44	대1-1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일부구간 선형 및 폭원 변경
	변경	대로	3	173	25~30	보조간선 도로	814	광3-44	대1-1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6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309	대1-1	대3-17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제일로 40번길
7	기정	중로	1	2	22	집산도로	409	광3-7	대3-17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변경	중로	1	2	22~28	집산도로	409	광3-7	대3-17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8	기정	중로	1	4	22	집산도로	340	대1-1	대3-173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9	기정	중로	1	5	16~22	집산도로	398	광3-7	대3-173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10	기정	중로	1	660	20	집산도로	305	광3-44	대1-1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변경	중로	1	660	20~25	집산도로	305	광3-44	대1-1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11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328	대2-14	중1-1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12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556	광3-44	중1-1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13	기정	중로	2	4	18	집산도로	573	광3-44	중1-2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14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385	중1-4	중1-660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종점 오기 정정
15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433	대1-12	중1-4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16	기정	소로	1	가	10	국지도로	61	대1-1	중2-3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17	신설	소로	1	A	10	국지도로	160	대2-14	대2-14	일반 도로		-	인주대로 305번길
18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523	중2-4	대1-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경인로 326번길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308 (235)	대3-172	대1-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연번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19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863	대2-14	광3-4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미추홀대로 645번길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95	중1-2	어린이 공원8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20	폐지	소로	2	3	8	국지도로	417	광3-44	대3-17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21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402	중2-5	소3-4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지구외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254	중2-5	대3-17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22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40	광3-7	소3-41	일반 도로		인고15-255 (15.09.30)	
	변경	소로	2	16	8	국지도로	260 (57)	광3-7	소3-41	일반 도로		인고15-255 (15.09.30)	
23	폐지	소로	2	25	8~10	국지도로	209	광3-7	소3-25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24	폐지	소로	2	32	8	국지도로	424	대2-14	중1-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25	폐지	소로	2	417	9	국지도로	206	광3-7	소3-25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26	폐지	소로	2	가	8	국지도로	156	대2-14	소3-2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27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90	중2-4	대3-17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도로폭원 및 시종점 변경
	변경	소로	3	6	8	국지도로	131	중2-4	소2-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28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326	중2-3	중2-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변경	소로	3	9	6	국지도로	120	중2-3	대3-17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29	폐지	소로	3	10	6	국지도로	184	대3-172	소3-25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30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42	대2-14	중2-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31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450	중1-1	광3-4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32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385	중2-3	중1-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33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232	소3-23	소3-9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34	폐지	소로	3	18	6	국지도로	104	소3-6	소2-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35	폐지	소로	3	19	6	국지도로	231	소3-23	소3-9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36	폐지	소로	3	20	6	국지도로	123	소3-25	소2-가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37	폐지	소로	3	21	6	국지도로	190	대3-172	소3-25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38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379	중2-4	소3-1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남주길 125번길
	변경	소로	3	23	6	국지도로	164	대3-172	소3-1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39	폐지	소로	3	25	6~7	국지도로	322	대2-14	중1-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40	기정	소로	3	27	6	국지도로	158	광3-44	소3-3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지구외

연번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41	폐지	소로	3	29	6	국지도로	477	소3-30	중1-5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42	기정	소로	3	30	6	국지도로	320	소3-41	중1-660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미추홀대로 646번길
	변경	소로	3	30	6	국지도로	125	대3-173	중1-660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43	기정	소로	3	31	6	국지도로	414	중1-660	소3-4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인주대로 407번길
	변경	소로	3	31	6	국지도로	234	중1-660	대3-17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44	기정	소로	3	32	6	국지도로	410	중2-5	소3-4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인주대로 417번길
	변경	소로	3	32	6	국지도로	242	중2-5	대3-17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45	기정	소로	3	34	6	국지도로	458	소3-32	중2-6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지구외
	변경	소로	3	34	6	국지도로	207	소3-32	중1-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46	기정	소로	3	35	6	국지도로	322	소2-4	중2-6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지구외
	변경	소로	3	35	6	국지도로	90	소2-4	중1-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47	폐지	소로	3	36	6~10	국지도로	383	대2-14	중1-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48	기정	소로	3	37	6	국지도로	335	소2-4	소3-40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지구외
	변경	소로	3	37	6	국지도로	115	소2-4	중1-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49	기정	소로	3	38	6	국지도로	237	대1-1	중1-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지구외
	변경	소로	3	38	6	국지도로	62	대1-1	중2-6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50	기정	소로	3	39	6	국지도로	319	대1-1	대3-17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지구외
	변경	소로	3	39	6	국지도로	70	대1-1	중2-6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51	폐지	소로	3	40	6	국지도로	101	중2-6	대3-17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52	기정	소로	3	41	6	국지도로	537	광3-44	중1-5	일반 도로		인고15-255 (15.09.30)	미추홀대로 632번길
	변경	소로	3	41	6~12	국지도로	537	광3-44	중1-5	일반 도로		인고15-255 (15.09.30)	
53	폐지	소로	3	44	4	국지도로	108	소3-34	소3-나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54	기정	소로	3	388	6	국지도로	61	대1-1	중2-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55	기정	소로	3	396	6	국지도로	434	중2-3	중2-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변경	소로	3	396	6	국지도로	219	중2-3	대3-17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56	기정	소로	3	402	6	국지도로	90	중1-1	소2-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57	폐지	소로	3	가	6	국지도로	245	광3-7	소3-25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58	기정	소로	3	다	6	국지도로	56	소3-41	소2-17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주) ( ) 는 촉진구역 내 연장임

※ 변경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2	대로1-12	• 일부구간 폭원 변경 - B=35~40m	·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확대
대로3-172	대로3-172	· 도로연장 및 폭원 변경 - L=817m→814m - B=25m→25~30m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선형 연장변경 및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확대
대로3-173	대로3-173	· 기점부 위치 및 도로연장 및 폭원 변경 - L=827m→814m - B=25m→25~30m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선형 연장변경 및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확대
중로1-2	중로1-2	· 도로 폭원 변경 - B=22m→22~28m	·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도로 폭원 확대
중로1-660	중로1-660	· 도로 폭원 변경 - B=20m→20~25m	·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확대
-	소로1-A	· 신설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2-1	소로2-1	· 도로연장 및 기점 변경 - L=523m→308m - 기점 : 중로2-4→대로3-172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기점부 위치 변경(구역외)
소로2-2	소로2-2	· 도로연장, 종점 변경 및 기점 오기정정 - L=565m→95m - 종점:광로3-44→어린이공원8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 도로 기점부 오기 정정(구역외)
소로2-3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4	소로2-4	· 도로연장 및 종점 변경 - L=402m→254m - 종점 : 소로3-41→대로3-173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2-16	소로2-16	· 도로폭원 연장 오기 정정 - L=40m→260m	· 도로폭원 연장 오기 정정
소로2-25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32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417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가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6	소로3-6	· 도로연장 및 종점 변경 - L=190m→131m - 종점 : 대로3-172→소로2-2 · 도로 폭원 변경 - B=6m→8m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보도설치를 위한 폭원 확장
소로3-9	소로3-9	· 도로연장 및 종점 변경 - L=326m→120m - 종점 : 중로2-4→대로3-172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구역외)
소로3-10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18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19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20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21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23	소로3-23	· 도로연장 및 기점 변경 - L=379m→164m - 기점 : 중로2-4→대로3-172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기점부 위치 변경(구역외)
소로3-25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29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30	소로3-30	· 도로연장 및 기점 변경 - L=320m→125m - 기점 : 소로3-41→대로3-173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기점부 위치 변경
소로3-31	소로3-31	· 도로연장 및 종점 변경 - L=414m→234m - 종점 : 소로3-41→대로3-173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3-32	-	· 도로연장 및 종점 변경 - L=410m→242m - 종점 : 소로3-41→대로3-173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3-34	소로3-34	· 도로연장 및 종점 변경 - L=458m→207m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3-35	소로3-35	· 도로연장 및 종점 변경 - L=322m→90m - 종점 : 중로2-6→중로1-4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3-36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37	소로3-35	· 도로연장 및 종점 변경 - L=335m→115m - 종점 : 소로3-40→중로1-4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3-38	소로3-38	· 도로연장 및 종점 변경 - L=237m→62m - 종점 : 중로1-4→중로2-6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3-39	소로3-39	· 도로연장 및 종점 변경 - L=319m→70m - 종점 : 대3-173→중로2-6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
소로3-40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41	소로3-41	· 도로 폭원 변경 - B=6m→6~12m	·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확대
소로3-44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396	소로3-396	· 도로연장 및 종점 변경 - L=434m→219m - 종점 : 중로2-4→대로3-172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위치 변경(구역외)
소로3-가	-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 주차장(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1,850.0	감) 1,850.0	-		
폐 지	4	주차장	주안2동 599-7 일원	419.0	감) 419.0	-	인고22-163 (22.06.13)	
폐 지	5	주차장	주안2동 704-1 일원	985.0	감) 985.0	-	인고22-163 (22.06.13)	
폐 지	7	주차장	주안4동 417-19 일원	329.0	감) 329.0	-	인고22-163 (22.06.13)	
폐 지	10	주차장	주안4동 415-24 일원	117.0	감) 117.0	-	인고22-163 (22.06.13)	

※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주차장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폐지
5	주차장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폐지
7	주차장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폐지
10	주차장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폐지

(2)공간시설(변경)

○ 공원(변경)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1,534.4	증) 5,187.0	56,721.4		
기정	104	송내공원	어린이공원	주안4동 1512-9 일원	1,597.3	-	1,597.3	74.11.06	
기정	83	주안공원	어린이공원	주안2동 554-5 일원	3,477.0	-	3,477.0	인고22-163 (22.06.13)	
기정	1	주안공원	어린이공원	주안2동 570-3 일원	8,785.3	-	8,785.3	인고10-139 (10.05.24)	
변경	2	주안공원	어린이공원	주안2동 596-19 일원	6,899.0	증) 5,168.0	12,067.0	인고22-163 (22.06.13)	
기정	4	송내공원	어린이공원	주안4동 1511-7 일원	3,286.0	-	3,286.0	인고22-163 (22.06.13)	저류시설: 3,638㎡
기정	5	미추공원	어린이공원	주안2동 486-3 일원	4,032.0	-	4,032.0	인고22-163 (22.06.13)	저류시설: 4,032㎡
기정	6	미추공원	어린이공원	주안2동 1454-22 일원	3,238.8	-	3,238.8	인고15-255 (15.09.30)	
폐지	7	미추공원	어린이공원	주안4동 453-51 일원	3,149.0	감) 3,149.0	-	인고22-163 (22.06.13)	
변경	8	-	어린이공원	주안2동 557-52 일원	7,667.0	감) 231.0	7,436.0	인고22-163 (22.06.13)	
기정	9	-	어린이공원	주안2동 470-1 일원	2,435.0	-	2,435.0	인고22-163 (22.06.13)	
변경	10	-	어린이공원	주안4동 384-26 일원	5,628.0	증) 272.0	5,900.0	인고22-163 (22.06.13)	
기정	1	경인공원	문화공원	주안4동 454-9 일원	1,340.0	-	1,340.0	인고14-153 (14.07.14)	문화시설: 1,340㎡
신설	3	-	어린이공원	주안4동 1511-45 일원	-	증) 3,127.0	3,127.0	-	

주) 공원의 면적은 CAD상 구적 면적임
주) 문화공원 내 문화시설의 연면적은 1,600㎡로 복합시행자가 미추홀구청에 무상제공(기부채납)

※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어린이공원	· 면적 변경 (A=6,899.0㎡→12,067.0㎡)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조정
7	어린이공원	· 폐지	· 공원시설 재배치에 따른 공원 폐지
8	어린이공원	· 면적 변경 (A=7,667.0㎡→7,436.0㎡)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조정
10	어린이공원	· 면적 변경 (A=5,628.0㎡→5,900.0㎡)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조정
3	어린이공원	· 신설 (3,127.0㎡)	· 주변 공원과 연계한 거점형 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신설

○ 녹지(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775.2	증) 2,516.4	7,291.6		
기정	1	녹 지	완충녹지	도화1동 459-1 일원	2,750.8	-	2,750.8	인고10-139 (10.05.24)	
변경	1	녹 지	경관녹지	주안2동 592-15 일원	986.0	증) 5.4	991.4	인고10-139 (10.05.24)	
기정	2	녹 지	경관녹지	주안4동 320-1 일원	1,038.4	-	1,038.4	인고10-139 (10.05.24)	
신설	2	녹 지	완충녹지	주안4동 303-53 일원	-	증) 2,511.0	2,511.0	-	

※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녹지	· 면적 변경 (A=986㎡→991.4㎡)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조정
2	완충녹지	· 신설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한 녹지 신설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 시장(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1	시 장	소매시장	주안2동 549-1 일원	3,541.8	감) 3,541.8	-	인고22-163 (22.06.13)	

※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시 장	· 폐지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시장 폐지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학교시설(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5,280.2	증) 3,553.7	38,833.9		
변경	1	학 교	중학교	주안2동 594-24 일원	11,556.0	감) 46.3	11,509.7	인고10-139 (10.05.24)	
기정	2	학 교	초등학교	주안2동 560-9 일원	11,633.5	-	11,633.5	인고10-139 (10.05.24)	
기정	3	학 교	초등학교	주안4동 378-25 일원	12,090.7	-	12,090.7	인고10-139 (10.05.24)	
신설	4	학 교	유치원	주안2동 558-59 일원	-	증) 3,600.0	3,600.0	-	

※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학 교	· 면적 변경 - A=11,556㎡→11,509.7㎡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부지 조정
3	학 교	· 면적 변경 - A=12,090.7㎡→12,100.0㎡	·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부지 조정
4	학 교	· 신설	·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유치원 신설

○ 문화시설(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340.0	-	1,340.0	-	
폐지	1	문화시설	문화시설	주안2동 558-59 일원	4,000.0	감) 4,000.0	-	인고22-163 (22.06.13)	
기정	2	문화시설	문화시설	주안4동 454-9 일원	1,340.0	-	1,340.0	인고15-255 (15.09.30)	문화공원 지하부 중복결정

주) 문화공원 내 문화시설의 연면적은 1,600㎡로 복합시행자가 미추홀구청에 무상제공(기부채납)

※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문화시설	· 폐지	· 입지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

○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10.7	증) 1,840.7	2,751.4		
변경	1	공공청사	파출소	도화1동 456-5 일원	348.7	증) 251.3	600.0	인고22-163 (22.06.13)	
기정	2	공공청사	경찰 지구대	주안4동 1512-10 일원	562.0	-	562.0	인고22-163 (22.06.13)	
신설	3	공공청사	행정 복지센터	주안2동 561-11 일원	-	증) 1,589.4	1,589.4	-	

※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면적 변경 - A=348.7㎡→600.0㎡	· 치안수요 충족을 위한 파출소 면적 변경
3	공공청사	· 신설	· 미추5구역 재개발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이전

(5) 방재시설(변경)

○ 저류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682.0	-	7,670.3		
변경	1	유수지	저류시설	주안4동 1511-7 일원	3,650.0	감) 11.7	3,638.3	인고10-139 (10.05.24)	어린이 공원4 중복결정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주안2동 486-3 일원	4,032.0	-	4,032.0	인고17-40 (17.03.13)	어린이 공원5 중복결정

※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저류시설)	· 면적 변경 - A=3,650㎡→3,638.3㎡	· 미추7구역 촉진구역 지정에 따라 도로구간 일부 미추7구역 편입(미추7-1구역)

라. 관련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 다만, 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은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부서) 협의,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제반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 타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아라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장(인천지역본부)
- 주 소 : 인천 서구 원당댕로 929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 계양구 둑실동 75-5번지 외 53필지
(75-6,74-8,272-16,64-2,64-8,65-3,서구 시천동 86-58,86-62,82-39,82-37,82-43,83-15,83-2,82-41, 86-54,86-60,86-56,181-4,83-13,83-12,82-33,82-2,82-3,82,82-4,83-3,83-10,82-10,82-9,83-4,86-5,86-38,86-11, 86-43,86-19,86-42,86-31,86-30,86-40,86-32,82-31,86-12,86-1,86-29,180-27,41-9,81-1,81-2,83-3,84-4,83-4,82-32,181-2)
- 면 적 : 30,523㎡(영구20,091㎡, 일시10,43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검단~경명로간 도로건설공사 교량설치(시천대교)
- 내 역 : 교각(PY1), 산책로 및 정서진로(옹벽포함), 공사용가도(패널식옹벽 포함), 이설농수로 등

5. 점용기간 : 2024.3.27. ~ 2029.3.26.

6. 공사기간 : 2024.3.27. ~ 2025.12.31.